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2

오스트리아

이 경 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2

오스트리아

이 경 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CONTENTS

법제현안분석지원  
현안대응 Issue Paper

<b>I. 오스트리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개요</b>	<b>4</b>
<b>II. 오스트리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기준 분석</b>	<b>7</b>
1.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 범위	7
1) 의무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7
2) 임의가입	8
3) 적용제외	8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기준	9
1) 가입대상	9
2) 적용제외	15
3) 가입방법 : 임의가입	16





<b>III. 오스트리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규정 분석</b>	<b>18</b>
1. 실업급여의 구성과 산정	18
1) 실업급여의 구성	18
2) 실업급여액의 지급수준	20
3) 실업급여 지급기간	20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규정분석	21
1) 청구 자격(고용보험법 제7조)	21
2) 실업보험 가입 시기	21
3) 실업급여의 성립 요건(고용보험법 제14조)	22
4)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22
5)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23
6) 실업보험 탈퇴	24
3. 수급 중 소득인정여부 및 범위	24
1) 미니잡(Geringfügig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24
2) 한 달을 초과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25
3)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26
<b>IV.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료 산정 규정분석</b>	<b>28</b>
<b>V. 시사점</b>	<b>30</b>
<b>참고 /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법 주요 규정</b>	<b>33</b>
-실업보험법(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확인 30.06.2018)	

# I /

## 오스트리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개요

- 사회보험법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리스크를 공동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여기에 의무보험(Pflichtversicherung)의 일반원칙이 적용
  - 의무보험의 일반원칙은 피보험자의 의사와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
  - 그러나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의무보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SVA 2018, S. 3)
  
- 의무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재해보험 및 실업보험으로 구성
  -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은 일반사회보험법, 상업사회보험법, 프리랜서사회보험법에서 규정
  - 일반 사회보험법 : 전형근로자, 자유근로자에 대한 연금/건강보험
  - 상업 사회보험법 : 자영자, 신자영자에 대한 연금/건강보험
    - \* 그 외 의무보험으로 농민사회보험법(BSVG: Bauern-Sozialversicherungsgesetz), 공증인보험법(NVG: Notarversicherungsgesetz), 공무원건강재해보험법(B-KUVG: Beamten-Kranken- und Unfallversicherungsgesetz)
  
-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
  - 사회보험기관(SVA: Sozialversicherungsanstal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은 연금 및 건강보험의 관리운영기관
    - 자영자의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기금의 관리기관
  - 노동시장서비스(AMS)은 실업보험의 관리운영기관
    - 자영자 고용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의 운영주체
  - 일반재해보험기관(AUVA: Allgemeine Unfallversicherung)은 재해보험의 관리운영기관

## &lt; 오스트리아 자영업자 관련 사회보험법체계 개요 &gt;

사회보험	법제	피보험자
연금 / 건강보험	일반사회보험법 ASVG: Allgemeines Sozialversicherungsgesetz	전형근로자 자유근로자
	상업사회보험법 GSVG: Gewerbliches Sozialversicherungsgesetz	자영업자 신자영업자
	프리랜서자영업자사회보험법 FSVG: Freiberuflich Selbständigen-Sozialversicherungsgesetz	프리랜서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보험법(이하 '고용보험') ALVG: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전형근로자 자유근로자 (자영업자, 신자영업자, 프리랜서)

## ■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의 추이

- 2008년 하반기와 2009년에 국제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인해 오스트리아 노동 시장은 2010년과 2011년에 노동 시장의 거시 경제 회복을 감안할 때 긴장 상태에 빠짐
- 2012년에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노동시장 상황은 긴장된 상태 유지
- 2016년에는 긍정적인 추세가 시작되어 2017년까지 계속

## ■ 2017년 고용 및 실업 현황

- 2017년 고용은 68,425건 (1.9%) 증가한 3,655,297건.
- 2017년 평균 수급자 수는 17,337건 (4.9%) 감소.
- 2017년 실업률은 평균 8.5%로 0.5% 포인트 하락.
  - 여성의 실업률은 7.9%로 남성의 9.0%보다 훨씬 낮음
  - 외국인 실업률은 12.5%
  - 실업률은 실업률이 전년도에 비해 모든 주에서 감소

■ 2017년 실업률 분석

- 2017년 오스트리아 전체 평균 339,976 명이 실업상태
- 147,150명의 여성과 192,825명의 남성이 보고
- 이는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17,337명 (-4.9 %) 감소한 것에 해당
- 수급자 수는 모든 연방 주에서 감소
- 성별 수급자 감소추이는, 남성 수급자(-11,633 명 또는 -5.7 %)의 수가 여성(-5,705 명 또는 -3.7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

# II

## 오스트리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기준 분석

### 1.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 범위

#### 1) 의무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 실업보험법(이하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 범위를 열거 규정(고용보험법 제1조1항)
  - 한명 또는 다수의 고용인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견습생
  - 재택근로자
  - 고용관계 또는 견습관계 이외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
  - 생략
  - 건강보험 의무보험관계 형성 또는 질병보호기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보험자유가 아닌 자
  - 일반사회보험법(ASVG)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자유근로자(Freie Dienstnehmer)는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짐(고용보험법 제1조제8항)

#### ■ 자유근로자 (Freier Dienstnehmer)

- 정의규정 (§4Abs 4 ASVG)
  - ① 사용종속관계를 특성으로 하지 않는 소위 자유고용계약(: Freier Dienstvertrag)에 근거로 일정 또는 불특정 기간 노무제공 의무
  - ② 1인의 사용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을 위하여 노무 제공
  - ③ 업무를 대체로 본인이 직접 이행

- ④ 자기 소유의 영업운영자산 없음
- ⑤ 법정이익단체(협회) 회원 가입 없음
- 기업구조 없이 자기근로하는 자유근로자 (Freier Dienstnehmer)

#### ■ 근로자 (Dienstnehmer)

- 정의규정 (§4Abs 4 ASVG)
- 근로자개념과 소득세법의 연계
- 소득세법상 납부의무가 있는 근로자
- 일반사회보험에 가입의무

## 2) 임의가입

#### ■ 상업 사회보험법(GSVG) 또는 프리랜서 사회보험법(FSVG)의 연금의무가입자

- 2009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
- 상업 사회보험법(GSVG) 또는 프리랜서 사회보험법(FSVG)에 따른 연금의무보험법관계를 형성한 피보험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신자영자 및 프리랜서)(실업보험법 제3조 제1항 제1문)
- 프리랜서 변호사 또는 토목기사 및 상업 사회보험법(GSVG) 제5항에 따른 연금보험의 피보험자

## 3) 적용제외

#### ■ 다음의 사람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함

- ① 여성으로서 60세에 이미 도달하였고, 노령연금을 받기 위하여 대기기간이 충족된 자
- ② 남성으로서 63세에 이미 도달한 자 또는
- ③ 노령연금 또는 양로연금(Ruhegenuss)이 인정된 자

##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기준

### 1) 가입대상

#### ■ 상업사회보험의 피보험자

- 상업 사회보험법(GSVG))에 따라서 연금의무보험관계(당연적용)를 형성한 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3조 제1항 제1문)

#### ■ 프리랜서 변호사 또는 토목기사 및 상업 사회보험법(GSVG) 제5항에 따른 연금보험의 피보험자<sup>1)</sup>

- 오스트리아는 일반적으로 각각 상이하게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4개의 피보험자 그룹 (① 상인(Gewerbetreibende), ② 영리회사의 출자자(Gesellschafter gewerbetreibender Gesellschaften), ③ 신자영업자(Neue Selbständige) 및 ④ 프리랜서)으로 구분

### (1) 상업사회보험의 의무가입자

#### 가. 자영업자

- 오스트리아 자영업자는 영업허가를 받고,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면 자영자 사회보험법 상 연금보험과 연금보험의 의무가입(강제가입, 의무보험)
  -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상공회의소(Wirtschaftskammer) 회원이 됨
  - 이 경우 개인은 상업사회보험에 대한 의무가입 가입요건을 충족

1) GSVG 제5조제1항 개별 직업군에 대한 강제보험 면제 - 예컨대 법적 전문 대표기관의 건강/연금보험의 의무가입자는 상업사회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상업적 영업활동

- 상업적 영업활동은 “자유 영업활동”(예, 상거래)과 “규제 영업활동”(수공업, 음식 및 숙박업)으로 구분
- 상업적 영업활동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
- 규제 영업활동은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을 요구

## 나. 영리회사의 출자자

- 공개 회사(Offene Gesellschaft)의 출자자(Gesellschafter),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Komplementär) 또는 유한회사의 경영진이 출자자인 경우 상업 사회보험법(GSVG)상 의무보험에 대한 전제요건을 충족

- 다만, 출자자는 사업자등록증(Gewerbeberechtigung)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이어야 함
- 유한회사의 경영진으로서 회사 등록부(Firmenbuch)에 등기되어야 함
- 유한회사의 경영진으로서 활동하면서 일반 사회보험법(ASVG)에 따라서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다. 신자영자

### ■ 일반적인 신자영자의 개념

- 신자영자는 자영업 또는 상업 활동으로부터 수익을 달성하고 그리고 아직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모든 자
- 신자영업자의 직무는 도급계약에 근거하지만, 협회의 회원이 아니면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행
- 신자영자는 상업 사회보험법(GSVG)에 따라서 피보험자를 형성하는 자
- 신자영자는 비상업적인 방법으로 자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 ■ 근거 법률

- 신자영자는 영업활동에 근거하여 소득세법(ESTG 1988, BGBl. Nr. 400) 제22조 제1호 ~ 3호

및 제5호 그리고 (또는) 제23조의 의미의 수입을 달성하는 자영업자

- 상업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1문은 명시적으로 “신자영자(Neue Selbständige)”로 쓰여 있지 않고, “자영업자(selbständig erwerbstätige Personen)”로 규정되어 있음
-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자영자의 정의 규정으로 상업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1문을 사용

### ■ 인정요건

- 신자영자는 상업 사회보험법(GSVG)에 규정된 의무보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신자영자는 자신의 활동에 기인하여 다른 규정(예, ASVG 또는 FSVG)에 따라서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야 함(상업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1문)
  - ② 신자영자는 자신의 활동에 의하여 세금상 및 영업상 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③ 소득은 보험 한도액(Grenzbetrag)에 도달하여야 함
  - ④ 보험 한도액은 최소 연간 5,256.60 유로
  - ⑤ 보험 한도액은 자영자의 주요영업활동 또는 부수영업활동 내지 하나 또는 다수의 수입원에 상관없이 적용(예, 연금, 실업급여, 육아 수당 등)

### ■ 범위<sup>2)</sup>

- ① 조형 예술가(Bildende Künstler), 음악가, 아티스트(Artisten), 카바레 예술가(Kabarettisten)
- ② 기타 예술가(Kunstschaffend)
- ③ 저널리스트(Journalisten)
- ④ ① ~ ③에 속하지 않는 신자영자. 다만, 이들이 자영업활동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고 그리고 의무보험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야 함

#### 2) - 예술가 및 작가

- 강연자 및 감정인
- 독립적인 연구자
- 프리랜서 기자
- 자영업 심리학자, 심리 치료사 및 물리 치료사
- 자영업 간병인

[http://www.unternehmer-in-not.at/art\\_5\\_16\\_169\\_0\\_gruenden\\_gewerbeschein-neue-selbstaendigkei-freiberufler.php](http://www.unternehmer-in-not.at/art_5_16_169_0_gruenden_gewerbeschein-neue-selbstaendigkei-freiberufler.php)

## \* 신자영자의 구분

- 신자영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협회회원이 아니지만, 영업활동으로 소득세법(ESTG 1988, BGBl. Nr. 400) 제22조 제1호 ~ 3호 및 제5호 또는 제23조의 소득이 있는 자
- 직업명만으로 구별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정의 원칙”에 따른다고 봄. 즉 직업명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예컨대 사회보험기관(SVA)의 지침서를 살펴보면 예술가와 저널리스트는 신자영자의 범위에 속함 (소득세법 제22조 제1호는 자영업 소득의 범위에 예술가와 저널리스트의 프리랜서 업무 소득을 포함) 그러나 상법의 적용은 받지 않되 법정이익단체(협회)의 회원인 프리랜서로서 의무보험(FSVG: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가입 가능
- 프리랜서와 신자영자의 구분은 법정이익단체나 협회의 회원 여부 및 소득세법상 영업소득의 확인 등으로 해석

## 라. 프리랜서

## ■ 프리랜서 그룹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법률규정이 적용

- 오스트리아에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사회보험법(FSVG)에 따라서 피보험관계를 형성

## ■ 프리랜서는 법정이익단체(협회)에 의하여 대리되기도 함

- 프리랜서 그룹에는 프리랜서 의사 및 치과의사, 자영업 약사, 토목기사(Ziviltechniker) 및 변리사 등이 해당됨

## (가) 프리랜서 의사 및 치과의사

## ■ 프리랜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프리랜서 사회보험법(FSVG)에 따라서 의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 의사협회 또는 치과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함

- 개업의와 치과의사는 특별한 등급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무보험관계가 형성
- 프리랜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정이익단체(협회)에 의하여 보호
- 상업 사회보험법(GSVG)에 따른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함

## (나) 약사, 토목기사 및 변리사

### ■ 프리랜서 약사, 토목기사 또는 변리사는 약사협회, 건축가 및 엔지니어 고문협회(Architekten- und Ingenieurkonsulentenkammer) 또는 변리사협회의 회원이 됨

- 프리랜서 약사, 토목기사 또는 변리사는 프리랜서 사회보험법(FSVG)에 따라서 단지 연금보험의 피보험관계를 형성
- 왜냐하면, 건축가 및 엔지니어 고문협회(Architekten- und Ingenieurkonsulentenkammer) 또는 변리사협회는 건강보험에서 피보험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면제시킬 수 있음
- 면제에 대한 전제요건은 건강보험과 동등한 가치가 보장되어야 함
- 건강보험과 동등한 가치의 선택가능성은
  - ① 상업 사회보험법(GSVG)의 자가 보험(Selbstversicherung)
  - ② 상업 사회보험법(GSVG)의 의무보험
  - ③ 일반 사회보험법(ASVG)의 자가 보험(Selbstversicherung)
  - ④ 사보험에 의한 단체계약
- 프리랜서 약사, 토목기사 또는 변리사는 재해보험에 대하여 피보험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그러나 일반 사회보험법(ASVG)에 따라서 자가 보험은 가능
- 재해보험은 일반상해보험기관(AUVA)에 신청 가능

### \* 프리랜서

#### ■ 근거 법령

- 프리랜서자영업자사회보험법(FSVG: Freiberuflich Selbständigen-Sozialversicherungsgesetz) (또는 상업사회보험법(GSVG))의 의무가입자
- 자유 영업활동(Freie Gewerbe)은 규제 영업활동(제94조) 또는 부분 영업활동(제31조)으로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는 제1조 제1항의 활동을 말함(영업활동규정(Gewerbeordnung) 제5조 제2항)

### ■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개념

- 스스로 그리고 자기책임 하에 자유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 스스로 자기 고객에 대하여 보호와 조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
- 자영업활동과 달리 영업허가를 요하지 않음
- 상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

### ■ 요건

- 오스트리아에서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이면서 자신의 활동에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다만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범죄기록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세무서는 신고 된 자영업활동이 프리랜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 프리랜서는 본질적으로 직업 그룹에 속하지만, 상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관련된 협회(법정이익단체)의 구성원(회원)이 됨
- 자유근로자는 자기책임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임한 고객, 환자 또는 의뢰인의 이익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
- 자유근로자는 직업상 자격, 교육 내지 창조적인 재능을 갖추어야 함 (만약 자유근로자가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졸업한 승인을 받아야 함)

### ■ 범위 예시<sup>3)</sup>

- 의료 분야: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조산원, 약사
- 경제 분야: 회계사
- 법률 분야: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손해사정인(Versicherungstechniker: 보험기술자)
- 기술 분야: 엔지니어,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토목기사

3) <https://www.businesscenter.at/arbeiten-ohne-gewerbeschein-freie-berufe-in-oesterreich/>

- 미디어 분야: 언론인, 통역사, 저자
- 창조 영역: 예술가, 디자이너, 배우
- \* 직종에 따라서는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경우, 법상 프리랜서(FSVG)와 신자영자(GSVG)의 개념범위가 중복되는 현상
- 예컨대 예술가와 저널리스트는 사회보험관리운영기관(SVA) 지침상 명시적으로 신자영자 범위에 속함(소득세법(ESStG) 제22조 제1호는 자영업 소득 범위에 예술가와 저널리스트의 업무 소득을 포함)
- 그러나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협회회원이 되어 프리랜서로서 법정 의무보험 가입 가능

## 2) 적용제외

### 1) 영업중지 신고

- 피보험자가 관할 기관에 영업중지를 신고하거나 자격을 임대한 경우 의무보험관계는 해지
  - 영업중지 신고는 최대 18개월까지 소급적용 가능
  - 진료 또는 입원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동 보험 분야에서 영업중지 신고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2) 저소득자

- 자영업자 (또는 의사)로서 소득이 적고 상업 사회보험법(GSVG)에 따라서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정해진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 소득금액에 따라 고용관계가 미미한\* 근로자, 재택근무자 및 자영업자는 실업보험 적용제외(고용보험법 제1조제2항d, 제4항, 제5항)

- \* 미미한 고용관계 판단기준 : 일반사회보험법 제5조제2항 (2018년 기준, 월438.05유로)
- 지난 60개월 이내 12개월 동안 상업 사회보험법(GSVG)과 프리랜서 사회보험법(FSVG)에 따라서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고 연간 소득이 3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sup>4)</sup>
- 60세를 초과한 경우 영업활동에 의한 소득은 연간 5,256.60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sup>5)</sup>

### 3) 가입방법 : 임의가입

#### (1) 임의 보험

- 의무보험은 특정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보험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임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형성
  - 임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가 특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관계는 종료
  - 임의 보험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보호의 필요성에 놓여 있지만, 법정보험이 요구하는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기 위함

\* 옵트 인(Opting in)

- 신자영자는 자신의 소득이 보험 한도액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관할기간에 가입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의무보험의 피보험자가 됨
- 이와 같은 임의 보험을 오스트리아에서는 “옵트 인(Opting in)”이라고 함
- 옵트 인에 의한 건강보험료: 월 33.51유로
- 옵트 인에 의한 재해보험료: 월 9.60유로
- 옵트 인의 시작은 신청서가 사회보험기관(SVA)에 도달한 날
- 옵트 인의 종료는 해지 신고서가 사회보험기관(SVA)에 도달한 달의 말일 또는 보험료 납부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도래와 함께 종료됨

4) SVA, Versicherungsschutz & Beitrage, Wien 2018, 10면.

5) SVA, Versicherungsschutz & Beitrage, Wien 2018, 10면.

## (2) 형식보험(Formalversicherung)

■ 오스트리아에서 의무보험에 대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형식보험이라고 함

- 형식보험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규정으로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에도 적용

### ■ 형식보험의 성립요건

- 형식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다음의 전제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의무보험의 피보험자가 됨

- ① 피보험자는 선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② 사회보험기관(SVA)은 아무 이유 없이 승인하여야 함
- ③ 건강 보험료는 최소 3개월, 연금 보험료는 최소 6개월간 중지 없이 납부되어야 함

### ■ 형식보험의 효력

- 형식보험관계가 일단 형성되는 경우 납부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음

- 형식보험의 피보험자는 의무보험 또는 임의보험의 피보험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III

## 오스트리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규정 분석

### 1. 실업급여의 구성과 산정

#### 1) 실업급여의 구성

- 실업급여는 기본금액, 가족수당 및 보조금액으로 구성(고용보험법 제20조 제1항)

##### (가) 기본금액(Grundbetrag)

-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구된 실업급여의 기본금액(Grundbetrag)은 사회 보험기관에 적립된 연간보험료기준액(Jahresbeitragsgrundlage)에 따라서 지지난 해의 실업 보험의무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연간보험료기준액은 해당 연도의 사회보험에 대한 재평가 요소(Aufwertungsfaktor)와 함께 갱신
  -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기본금액은 지난해의 연간 보험료 기준액에 따름
- 지난해 또는 지지난해에 연간 보험료 기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전 년도의 마지막 연간 보험료 기준액이 적용됨
- 만약 연간 보험료 기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본금액은 적용이전 지난 6개월간의 금액에 따라서 확정됨
- 총과세기준(Bruttoermessungsgrundlage)은 순가액(Nettowert)으로 환산
  - 직원이 1명인 기간 동안의 기본금액은 사업장이 표준사회세로 납부한 세금과 소득세는 공제해줌
  - 실업급여의 기본금액으로서 일일(하루 일별) 산정에 사용되는 단위(Tagsatz)는 산출된 일일 순

소득의 55%

-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 실업보험은 각 연간 보험료 기준액과 결부된 계산에 따라서 산정

#### (나) 가족수당

-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기여하는 가족구성원은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20조 제2항)
- 가족수당은 자녀와 손자, 의붓 자녀, 입양 자녀 및 수양 자녀에 대하여 지급(고용보험법 제20조 제2항)
- 가족수당은 배우자, 동거인 및 등록된 파트너에게 인정(고용보험법 제20조 제5항)
- 배우자, 동거인 및 등록된 파트너는 수입이 없거나 또는 아주 적어야 함 및(고용보험법 제20조 제3항 제2문)
- 미성년자 또는 장애 아동과 함께 거주하거나 또는 이들이 보호의무(Obsorgeverpflichtung) 상태에 있어야 함(고용보험법 제20조 제3항)

#### (다) 보조금액

- 추가교육 및 재교육 또는 노동시장에 재통합 훈련기간 동안 관계된 비용은 매일 2.00 유로의 추가 금액이 지급됨
- 추가 금액에 의하여 실업급여(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기본금액)는 적어도 평균 수당 기준율(Ausgleichszulagenrichtsatz)의 금액까지 증액됨

##### \* 출산급여

- 여성인 신자영자가 실업보험의 피보험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출산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자영업활동을 중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의무보험관계는 자영업활동이 중지된 달의 말일에 종료됨

## 2) 실업급여액의 지급수준

- 실업급여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선택된 보험금 기준액에 따라서 산정

< 2018년도 기준 실업급여액 기준 >

일 실업급여	월 보험료
24.06유로	89.78 유로 ; 상업 사회보험법 - 최고 보험금 기준액의 1/4
38.32유로	179.55 유로 ; 상업 사회보험법 - 최고 보험금 기준액의 1/2
52.98유로	269.33 유로 ; 상업 사회보험법 - 최고 보험금 기준액의 3/4

\* 실업급여의 최고 산정

- 실업급여는 다음의 경우보다 더 높게 산정될 수 없음
- 수급자가 가족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서 일일 순이익의 최대 60%
- 수급자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서 일일 순이익의 최대 80%(한 명 또는 다수의 가족수당이 포함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음)

## 3) 실업급여 지급기간

-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20주 동안 지급됨(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제1문)

- 156주 동안 실업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 실업급여는 30주 동안 지급됨(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제2문)

\* 지급기간 연장

-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시점에 40세에 도달하고 지난 10년 내에 312주 동안 실업급여의 피보험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의 실업급여는 39주까지 연장됨(고용보험법 제18조 제2항 a)
-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시점에 50세에 도달하고 지난 15년 내에 468주를 실업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종사한 사람의 실업급여는 52주까지 연장됨(고용보험법 제18조 제2항 b)

- 법정사회보험에 의하여 재활치료를 청구한 사람의 실업급여는 특정 전제조건 하에 78주까지 지급기간이 연장됨(고용보험법 제18조 제2항 c)
- 직업교육에 참가한 사람의 경우 최대 3 또는 4년간 지급기간이 연장됨

##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규정분석

### 1) 청구 자격(고용보험법 제7조)

- 실업급여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자(고용보험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지급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는 자(고용보험법 제7조 제1항 제3호)
- 직업소개(Arbeitsvermittlung)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고용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호)
  - 2008년 1월 1일부터 주당 최소 20시간을 노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직업 소개가 가능(고용보험법 제7조 제7항 제1문)
  - 1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아동을 보살피는 경우 주당 16시간이 적용(고용보험법 제7조 제7항 제2문)

### 2) 실업보험 가입 시기

- 2008/2009년에 이미 자영업자인 경우
  - 2008/2009년에 이미 자영업자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기관(SVA)에 신고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사회보험기관(SVA)에 가입 가능

■ 2008년 12월 31일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상업 사회보험법(GSVG) 및 프리랜서 사회보험법(FSVG)상 연금보험의 시작 또는 상업 사회보험법(GSVG) 제5항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기관(SVA)에 실업보험을 가입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문)
- 실업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실업보험은
  - ① 연금보험의 시작 또는 예외(3개월 내 가입 공고)와 함께 시작 또는
  - ② 규정된 기간 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최초 8년, 16년, 24년(동 기간의 종료부터 6개월 이내)이 경과한 경우 시작(고용보험법 제5조 제1항)

### 3) 실업급여의 성립 요건(고용보험법 제14조)

- 최초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이전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 52주간 직업 활동을 수행하고(규정기간), 이를 통해서 실업보험의 피보험관계를 형성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문)
- 실업급여를 이미 1회 청구한 사람은 지난 12개월 내에 28주간 실업보험의 피보험자여야 함(규정기간)(고용보험법 제14조 제2항 제1문)
  - 만 25세 이하의 사람이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26주간 실업보험의 피보험자여야 함(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2문)

### 4)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 실업급여는 고용노동서비스(AMS)에 개인적인 예비 면담(Vorsprache)을 통해서 신청
  - 실업사실의 통지는 실업상태의 발생 이전에 신고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실업상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실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개인 면담은 실업 첫째 날에 관할 지역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 실업상태의 발생 후(실업이 시작된 후) 늦어도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실업상태를 신고한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의 공백을 예방할 수 있음
  -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고용노동서비스(AMS)의 온라인 서비스에 의하여 가능
- 실업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5)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적절한 직무를 받아들여야 함

\* 적절한 직무

- 신체적 능력과 상응해야함
- 신체적 및 도덕적으로 위험하지 않아야 함
- 적합한 보수를 받음(단체 협약)
-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거주지에서 직무가 가능해야 함
- 법률상 보호의무가 준수되어야 함

\* 만약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위험이 없고, 새로운 직무지에 숙소가 준비된 경우 거주지 외에서 직무(예, 관광 분야)는 일반적으로 승인

- 적절한 직업 소개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법에 따라서 6주간 지급되지 않음
  - 수급자가 직업 소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8주간 실업급여가 제한

## 6) 실업보험 탈퇴

- 실업보험의 탈퇴는 가입 후 8년, 16년, 24년 등 8의 배수 년이 경과하고, 동 기간의 종료부터 6개월 이내 탈퇴가능(고용보험법 제3조 제6항)

## 3. 수급 중 소득인정여부 및 범위

### 1) 미니잡(Geringfügig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 파트타임으로, 자유 고용계약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미니잡으로 가능
  - 많은 근로자들은 육아수당, 복도 연금 또는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미니잡을 선택
  - 미니잡에 대한 명확히 정의된 허용 가능한 최대 고용시간은 규정 없음
  - 미니잡의 판단방법으로서 한계소득액(Geringfügigkeitsgrenze)\*이 적용

\* 한계소득액(Geringfügigkeitsgrenze)

- 한계소득액은 수급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소득활동이 가능한 매월 최대금액이 됨
- 오스트리아에서 한계소득금액은 2018년 현재 월 438.05유로(일반사회보험법 제5조 제2항)

- 미니잡은 순수입에 세금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임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보다 간단
  - 수급자는 한계소득액을 시간당 급여로 나눔으로써 자기가 월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결정 가능

- 만약 수급자가 시간당 9유로를 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10시간씩 일을 함으로써 매월 받을 수 있는 한계소득금액이 계산가능

**\* 저소득자**

- 자영업자 또는 의사로서 소득이 적고 상업 사회보험법(GSVG)에 따라서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정해진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 소득금액에 따라 고용관계가 미미한\* 근로자, 재택근무자 및 자영업자는 실업보험 적용제외(고용보험법 제1조제2항d,제4항,제5항)

\* 미미한 고용관계 판단기준 : 일반사회보험법 제5조제2항 (2018년 기준, 월438.05유로)

-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는 실업급여의 공제 없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매월 한계소득액까지 고용관계를 형성 가능
  - 이 경우 수급자는 노동시장서비스(AMS)에 신고 의무
- 수급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노동시장서비스(AMS)가 신고 되지 않는 활동을 확인하는 경우, 수급자의 수입은 한계소득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
  - 이 경우 수급자는 미니잡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하고 최소 4주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

## 2) 한 달을 초과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 수급자가 2개월의 일시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소득활동이 28일 이상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인 자영업활동 또는 비자영업활동으로부터 받는 수입이 최저 임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소득활동기간 이외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를 재조정하여 산정

### ■ 미니잡의 수입이 최저 임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 수급자의 순수입은 비자영업활동으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자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에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제외
- 기타 사업 경비는 적용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체 10%가 적용

#### \* 사례

매일 26유로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A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순수입 1,000유로의 단  
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순이익(1,000유로) - 최대 임금한도액(438.05유로) = 기초산입금액(561.95유로)  
여기에서 기초산입금액(561.95유로)에 대한 90%는 505.755유로이며, 여기에 나누기 2  
월의 일수(28)은 일당 18.06유로로 계산된다.

$$\text{기초산입금} \times 90\% / \text{해당 월의 일수} = \text{금액/일}$$

여기에 하루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 26.00유로 - 18.06 = 7.94유로

그 결과 A는 2월에 순이익 1,000유로와 추가로 22일(2월 1일 - 4일 및 2월 11일-28일)에  
대한 174.68유로(22일 x 7.94)의 실업급여로 지급 받는다.

## 3)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 ■ 수급자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일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기간을 표시하 는 경우

- 지급 가능한 실업급여 또는 재난 지원금은 다음 사례 참조
- 다만, 소득활동에 따른 수입은 월간 최저 임금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않됨

#### \* 사례

B는 4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여름 공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B는 2,000유로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순이익 나누기 도급계약일의 수) x 30 = 평균 월 소득

$$\underline{(2,000\text{유로} / 110\text{일}) \times 30 = 545.45\text{유로}}$$

동 금액은 수급자가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임금한도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IV

##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료 산정 규정분석

- 최초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의무보험기간 동안 연금보험 또는 상업 사회보험법(GSVG) 제5조에 규정된 예외조항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실업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아래 3개의 월별 보험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보험금 기준액(Beitragsgrundlage)	월 보험료
상업 사회보험법 - 최고 보험금 기준액의 1/4	89.78유로
상업 사회보험법 - 최고 보험금 기준액의 1/2	179.55유로
상업 사회보험법 - 최고 보험금 기준액의 3/4	269.33유로

- 실업보험 가입자가 최초 보험금 기준액을 선택하는 경우 전체 실업보험기간동안 적용됨
- 보험금 기준액은 보험료의 금액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보장금액에까지 미침
- 월 보험료 = 보험금 기준액(Beitragsgrundlage) × 보험료율(Beitragssatz)
  - 자영업자의 보험료율(Beitragssatz)은 6%에 해당 (오프인인 경우 보험금 기준액의 8%)
  - 자영업자의 보험금 기준액은 최고 보험금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최고 보험금 기준액(Höchstbeitragsgrundlage)

- 보험료 산정을 위해 가능한 최대 보험금 기준
- 보험에 들지 않는 수입을 얻은 경우, 보험료는 최고 보험금 기준액으로 산정
- 2018년 최고 보험금 기준액은 월 5,985유로

● 자영업자의 월보험료 산정(예시)

: 최고 보험금 기준액인 5,985유로의  $1/4 \times$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인 8% = 89.78유로

# V

## 시사점

- 노동시장내 다양한 근로·고용형태 속에서 자영업자의 인적 개념 범위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기준은 각 국의 법체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현행법상 자영업자 개념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
  - 한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개념 및 고용관계의 실제 그리고 직역 및 직종의 실태 등을 판단하여 비교 분석해야 함
  
- 고용보험법의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의 근거 논리
  - 고용보험법은 제정당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인적범위로 하고 실업을 요보호 위험으로 정립
  - 다양한 근로형태의 변형으로 인해 사회보험으로부터의 회피에 대응 필요
  -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고용촉진의 목적이 포함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체계
  - 고용보험법내 자영업자 관련 규정을 둠(사회보험법상 자영업자를 독립법체계로 두기도 함)
  - 제한 요건이 있는 임의가입 방식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급여와 보험료의 산정
  - 실업급여수급 중 소득인정 기준 및 이에 따른 보험급여 산정기준 참조
  - 실업급여수급기간에도 소득활동의 이익을 보장하여, 실업급여수급권자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
  - 소득의 미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규정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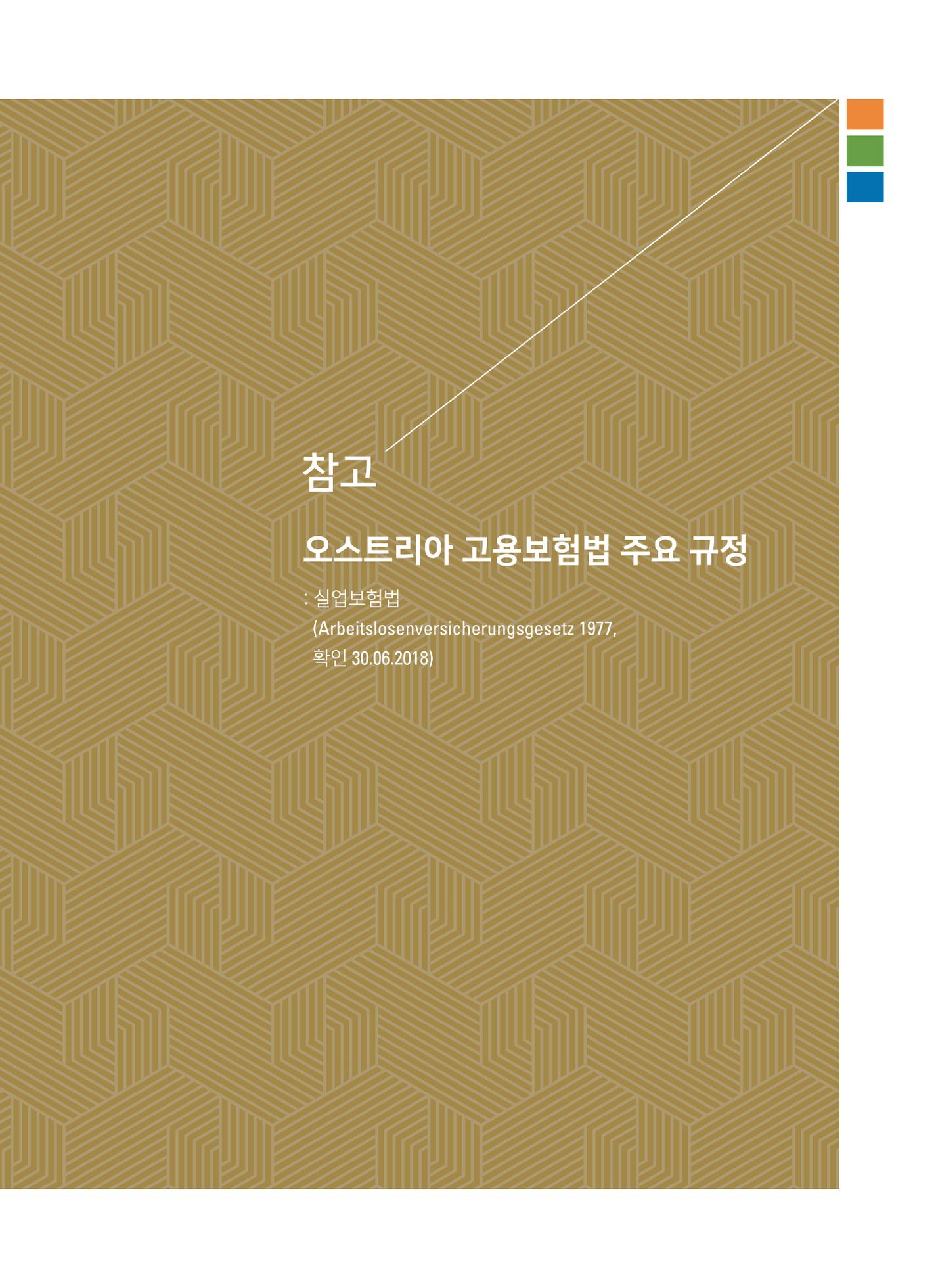
### ■ 자영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지원제도

-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
- 고용보험가입경력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지원과 같이, 임부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중단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 ■ 그 외 과제

- 고용보험관리운영기관의 운영(관리체계 등) 현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련 실태(급여지급 등)
- 청년, 여성 등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상 조치와 실효성





## 참고

###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법 주요 규정

: 실업보험법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확인 30.06.2018)

<p>Zweites Kapitel Versicherungspflicht</p> <p>Artikel I Umfang der Versicherung</p>	<p>실업보험법(:고용보험법)</p> <p>제1절 보험의 범위</p>
<p>§ 1.</p> <p>(1) Für den Fall der Arbeitslosigkeit versichert (arbeitslosenversichert) sind</p> <p>a) Dienstnehmer, die bei einem oder mehreren Dienstgebern beschäftigt sind,</p> <p>b) Lehrlinge,</p> <p>c) Heimarbeiter,</p> <p>d) Personen, die zum Zwecke der vorgeschriebenen Ausbildung für den künftigen, abgeschlossene Hochschulbildung erfordernden Beruf nach Abschluß dieser Hochschulbildung beschäftigt sind, wenn die Ausbildung nicht im Rahmen eines Dienst- oder Lehrverhältnisses erfolgt, jedoch mit Ausnahme der Volontäre, die kein Entgelt beziehen,</p> <p>e) Personen, die österreichische Staatsbürger oder diesen gleichzustellen sind (wie Staatsangehörige eines Mitgliedstaates des Abkommens über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oder der Schweiz) und gemäß dem Entwicklungshelfergesetz, BGBl. Nr. 574/1983, von einer Entwicklungshilfeorganisation im Rahmen der Entwicklungshilfe als Entwicklungshelfer oder Experten beschäftigt oder ausgebildet werden,</p> <p>f) selbständige Pecher, das sind Personen, die, ohne auf Grund eines Dienst- oder Lehrverhältnisses beschäftigt zu sein, durch Gewinnung von Harzprodukten in fremden Wäldern eine saisonmäßig wiederkehrende Erwerbstätigkeit ausüben, sofern sie dieser</p>	<p>제1조</p> <p>(1) 실업(실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p> <p>a) 한명의 고용인 또는 다수의 고용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p> <p>b) 견습생</p> <p>c) 재택근로자</p> <p>d) 고등교육을 졸업한 후 미래에 체결되는 고등교육에 필요한 직업을 위하여 규정된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만 직업교육은 무급인 실습생을 제외하고 고용관계 또는 견습관계의 범위에서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p> <p>e) 오스트리아 국민 또는 이와 동등한 사람(예,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체약국 또는 스위스 국민) 및 개발도상국 자원봉사자법(BGBl. Nr. 574/1983)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자원봉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개발도상국 지원 범위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조직으로부터 고용되거나 또는 교육받은 사람</p> <p>f) 고용관계 또는 견습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국 산림에서 수지 제품의 생산을 통해 계절과 관계된 반독적인 영리활동을 행하는 자영업자</p>

Erwerbstätigkeit in der Regel ohne Zuhilfenahme familienfremder Arbeitskräfte nachgehen,

g) Personen, die an einem Verwaltungspraktikum im Sinne des Abschnittes Ia des Vertragsbedienstetengesetzes 1948, BGBl. Nr. 86, teilnehmen,

h) Personen, die in einem Ausbildungsverhältnis zur Evangelischen Kirche A. B. oder zur Evangelischen Kirche H. B. stehen (Lehrvikare und Pfarramtskandidaten), sowie nicht definitiv bestellt geistliche Amtsträger dieser Kirchen,

soweit sie in der Krankenversicherung auf Grund gesetzlicher Vorschriften pflichtversichert sind oder Anspruch auf Leistungen einer Krankenfürsorgeanstalt haben und nicht nach Maßgabe der folgenden Bestimmungen versicherungsfrei sind.

g) 1948년 계약공무원법(BGBl. Nr. 86) 제1a절의 의미에서 행정실습에 참가하는 사람

h) 개신교 A. B. 또는 개신교 H. B.와 직업교육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예, 교육목사 및 목사직 후보자) 및 동 교회의 성직 공무원으로서 확정적으로 임명되지 않는 사람.

이점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건강 보험에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질병보호기관의 이행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서 적용제외(보험자유)가 아니어야 한다.

(2) Ausgenommen vo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 sind

a) Personen, die die allgemeine Schulpflicht noch nicht beendet haben, sowie Personen, die der allgemeinen Schulpflicht nicht unterliegen oder von ihr befreit sind, bis zum 1. Juli des Kalenderjahres, in dem sie das 15. Lebensjahr vollenden;

b) Dienstnehmer, die in einem öffentlich-rechtlichen Dienstverhältnis zum Bund, zu einem Land, einem Gemeindeverband oder einer Gemeinde sowie zu einem von diesen Körperschaften verwalteten Betrieb, einer solchen Unternehmung, Anstalt, Stiftung oder einem solchen Fonds stehen, sofern sie gemäß § 5 Abs. 1 Z 3, 3a lit. b, 3b lit. b, 4 und 12 des Allgemeinen Sozialversicherungsgesetzes von der Vollversicherung nach § 4 des Allgemeinen Sozialversicherungsgesetzes ausgenommen sind;

(2) 다음의 사람은 실업보험의무로부터 제외된다.

a) 의무교육을 아직 마치지 않는 사람 및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 또는 15세에 도달하는 해의 7월 1일까지 실업의무보험은 면제된다.

b)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체 및 동 단체로부터 관리되는 기업, 회사, 기관, 재단 또는 이들의 기금에 대하여 공법상 고용관계가 놓여 있는 근로자. 다만 여기에서 근로자는 일반 사회보험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3a항 b, 제3b항 b, 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서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에 따른 전액보험으로부터 배제된다.

<p>c) Personen, die nach § 2 Abs. 1 Z 2 des Bauern-Sozialversicherungsgesetzes, BGBl. Nr. 559/1978, pflichtversichert sind;</p> <p>d) Dienstnehmer, Heimarbeiter und selbständige Pecher, die nach der Höhe des Entgelts geringfügig beschäftigt sind;</p> <p>e) Personen, denen eine im § 22 Abs. 1 genannte Leistung zuerkannt wurde oder welche die Anspruchsvoraussetzungen für eine im § 22 Abs. 1 genannte Leistung, ausgenommen die Korridorpension, erfüllen, oder die jenes Lebensalter, das ein Jahr nach dem gesetzlichen Mindestalter für eine Korridorpension liegt, vollendet haben, ab dem Beginn des folgenden Kalendermonats;</p> <p>f)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am Freiwilligen Sozialjahr, am Freiwilligen Umweltschutzjahr, am Gedenkdienst oder am Friedens- und Sozialdienst im Ausland nach dem Freiwilligengesetz, BGBl. I Nr. 17/2012, hinsichtlich dieser gemäß § 4 Abs. 1 Z 11 ASVG versicherten Tätigkeit;</p> <p>g)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am Integrationsjahr nach dem Freiwilligengesetz, BGBl. I Nr. 17/2012, hinsichtlich dieser gemäß § 8 Abs. 1 Z 4a ASVG versicherten Tätigkeit.</p>	<p>c) 농부-사회보험법(BGBl. Nr. 559/1978)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의무보험관계인 사람</p> <p>d) 보수 금액에 따라서 근소하게 종사하는 근로자, 재택근무자 및 자영업자</p> <p>e) 제22조 제1항에 언급된 이행이 승인된 사람 또는 제22조 제1항에 언급된 이행에 대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한 사람(복도 연금 제외) 또는 복도 연금(Korridorpension)에 대하여 법정 최소 연령 이후 1년이 존재하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p> <p>f)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보험활동과 관계된 자발법(BGBl. I Nr. 17/2012)에 따라서 자발적 사회년, 자발적 환경보호년, 추모식 또는 외국에서 평화와 사회봉사에 참가하는 사람</p> <p>g) 자발법(BGBl. I Nr. 17/2012)에 따라서 통합해에 참가한 사람, 이점에 있어서 일반 사회보험법 제8조 제1항 제4a호에 따라서 보험 활동.</p>
<p>(3) Die Versicherungsfreiheit nach Abs. 2 ist bei Dienstnehmern, die bei demselben Dienstgeber zu versicherungspflichtiger und versicherungsfreier Beschäftigung herangezogen werden, nur dann gegeben, wenn sie überwiegend in versicherungsfreier Beschäftigung tätig sind.</p>	<p>(3) 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보험자유)는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인에서 보험의무와 적용제외(보험자유) 직무에 고려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허용된다. 다만, 근로자가 적용제외(보험자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4) Bei der Beurteilung der Frage, ob eine Beschäftigung als geringfügig gilt, ist § 5 Abs. 2 ASVG sinngemäß anzuwenden. Eine Beschäftigung als Hausbesorger im Sinne des Hausbesorgergesetzes, BGBl. Nr. 16/1970, gilt jedoch dann als geringfügig, wenn das Entgelt die im § 5 Abs. 2 ASVG angeführten Beträge nicht überschreitet.</p>	<p>(4) 직무가 사소한 것으로서 간주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평가되는 경우 일반 사회보험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수가 일반 사회보험법 제5항 제2조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법(BGBl. Nr. 16/1970)에서 관리인으로서 직무는 사소한 것으로서 간주된다.</p>
<p>(5) Abs. 4 erster Satz gilt sinngemäß für Heimarbeiter und selbständige Pecher.</p>	<p>(5) 제4항 첫 번째 문장은 재택근무자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적용된다.</p>
<p>(6) Für Beginn und Ende der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 gelten die §§ 10 und 11 des Allgemeinen Sozialversicherungsgesetzes.</p>	<p>(6) 일반 사회보험법 제10조 및 제11조는 실업보험의 무의 시작과 종료에 대하여 적용된다.</p>
<p>(7) Abs. 1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 ist auf Eisenbahnbedienstete, für deren arbeitsrechtliche Ansprüche der Bund haftet und die unkündbar sind, ab 1. Jänner 2000 anzuwenden.</p>	<p>(7) 제1항(실업보험의무)는 2000년 1월 1일부터 철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여기에서 연방은 철도근로자의 노동법상 청구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해고할 수 없어야 한다.</p>
<p>(8) Freie Dienstnehmer im Sinne des § 4 Abs. 4 des Allgemeinen Sozialversicherungsgesetzes (ASVG), BGBl. Nr. 189/1955, sind Dienstnehmern gleich gestellt.</p>	<p>(8) 일반 사회보험법(BGBl. Nr. 189/1955)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자유근로자는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p>
<p><b>Arbeitslosenversicherung selbständig Erwerbstätiger</b></p>	<p><b>자영업자 실업보험</b></p>
<p><b>§ 3.</b></p> <p>(1) Erwerbstätige Personen, die auf Grund einer Erwerbstätigkeit der Pflichtversicherung in der Pensionsversicherung nach dem GSVG unterliegen oder gemäß § 5 GSVG von dieser Pflichtversicherung ausgenommen sind, können nach Maßgabe der folgenden Bestimmungen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einbezogen werden, wenn diese nicht auf Grund ihres Lebensalters gemäß § 1 Abs. 2 lit. e vo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 ausgenommen sind.</p>	<p><b>제3조</b></p> <p>(1)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리활동으로 인하여 상업 사회보험법(GSVG)에 따라서 연금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상업 사회보험법(GSVG) 제5조에 따라서 의무보험이 배제되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서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실업보험이 피보험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제1조 제2항 e에 따라서 실업보험의무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p>

(2) Personen, die die Voraussetzungen des Abs. 1 erfüllen, werden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einbezogen, wenn sie fristgerecht ihren Eintritt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erklären. Diese Personen sind von der Sozialversicherungsanstal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unmittelbar nach Einlangen der Meldung oder sonstigen Kenntnisnahme der Pflichtversicherung in der Pensionsversicherung oder Ausnahme von der Pflichtversicherung gemäß § 5 GSVG schriftlich auf die maßgeblichen Umstände der Einbeziehung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insbesondere die Frist für den zulässigen Eintritt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die Bindungsdauer der Entscheidung für oder gegen die Einbeziehung und die Wahlmöglichkeit der Beitragsgrundlage hinzuweisen.

(3) Die Frist für den Eintritt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gemäß Abs. 2 beträgt sechs Monate ab der Verstädigung durch die Sozialversicherungsanstal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Der Eintritt ist schriftlich mitzuteilen. Wird der Eintritt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binnen drei Monaten ab der Verstädigung mitgeteilt, so erfolgt die Einbeziehung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ab dem Beginn der die Pflichtversicherung in der Pensionsversicherung oder deren Ausnahme von der Pflichtversicherung gemäß § 5 GSVG begründenden Erwerbstätigkeit, frühestens ab 1. Jänner 2009, in den übrigen Fällen ab dem Beginn des auf das Einlangen der Mitteilung folgenden Kalendermonats. Werden Erwerbstätige rückwirkend in die Pflichtversicherung in der Pensionsversicherung einbezogen, so erfolgt die Einbeziehung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nur, wenn auch eine laufende Pflichtversicherung besteht, und frühestens ab dem Beginn des auf die Feststellung der Pflichtversicherung in der Pensionsversicherung folgenden Kalendermonats.

(2) 제1항의 전제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기간 내에 가입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실업보험의무관계를 형성한다. 상업 경제 사회보험기관은 실업보험의 피보험자가 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신고의 도달 후 또는 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내지 상업 사회보험법(GSVG) 제5조에 따라서 의무보험이 배제되는 것을 인지한 후, 실업보험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특히 실업보험에 가입 가능한 기간, 실업보험 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의무이행기간 및 보험료 기준액의 선택가능성에 대하여 문서로서 통지한다.

(3) 제2항에 따른 실업보험의 가입기간은 상업 경제 사회보험기관이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가입은 문서로서 통지되어야 한다. 실업보험의 가입신청이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보험의 피보험관계는 연금보험의 피보험관계가 형성되거나 또는 상업 사회보험법(GSVG) 제5조에 따라서 연금보험의 피보험관계가 배제되는 영업활동의 시작일로부터 이루어진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급적으로 연금보험에 의무보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실업보험관계는 지속적인 의무보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형성되고 그리고 일러야 연금보험에서 의무보험의 확인이 귀결되는 달의 시작 일에 이루어진다.

<p>(4) Personen, die den Eintritt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erklären, haben eine der gemäß § 2 AMPFG zur Auswahl stehenden Beitragsgrundlagen auszuwählen. Die gewählte Beitragsgrundlage gilt ab dem Beginn der Einbeziehung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Die Einbeziehung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und die gewählte Beitragsgrundlage gelten, soweit kein zulässiger Austritt erfolgt, für alle (künftigen) Zeiträume, in denen die Voraussetzungen des Abs. 1 vorliegen.</p>	<p>(4) 실업보험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동시장 정책-자금조달법(AMPFG) 제2조에 따라서 보험료 기준액을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된 보험료 기준액은 실업보험에 포함된 날부터 시작된다. 실업보험에 포함되고 선택된 보험료 기준액은 제1항의 전제요건이 존재하는 미래의 모든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이점에 있어서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p>
<p>(5) Personen, deren nicht genützte Eintrittsmöglichkeit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oder deren Austritt aus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acht Jahre oder ein Vielfaches von acht Jahren zurück liegt, können (neuerlich)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einbezogen werden. Der Antrag ist bei der Sozialversicherungsanstal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jeweils binnen sechs Monaten nach Ende des (letzten) achtjährigen Bindungszeitraums einzubringen. Die Frist von sechs Monaten erstreckt sich um Zeiträume, in denen die Voraussetzungen des Abs. 1 nicht vorliegen. Die (neuerliche) Einbeziehung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erfolgt ab dem Vorliegen der Voraussetzungen, frühestens mit Beginn des folgenden Kalendermonats.</p>	<p>(5)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실업보험에서 탈퇴한 지 8년 또는 8년의 배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새로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청서는 상업 경제 사회보험기관에 (마지막) 8년이 경과한 후 6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6개월의 기간은 제1항의 전제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까지 미친다. (새로운) 실업보험에 포함되는 것은 이르면 다음 달의 시작과 함께 전제요건이 존재하는 날부터 발생한다.</p>
<p>(6) Personen, deren (zuletzt erfolgte) Einbeziehung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gemäß Abs. 1 oder Abs. 5 acht Jahre oder ein Vielfaches von acht Jahren zurück liegt, können aus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austreten. Der Austritt ist der Sozialversicherungsanstal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jeweils binnen sechs Monaten nach Ende des (letzten) achtjährigen Bindungszeitraums mitzuteilen. Die Frist von sechs Monaten erstreckt sich um Zeiträume, in denen die Voraussetzungen des Abs. 1 nicht vorliege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endet mit dem Ende des auf die Mitteilung des Austritts folgenden Kalendermonats.</p>	<p>(6)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실업보험에 포함된 기간이 8년 내지 8년의 배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업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마지막) 8년이 경과된 후 6개월 내에 상업 경제 사회보험기관에 통지되어야 한다. 6개월의 기간은 제1항의 전제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까지 미친다. 실업보험은 탈퇴의 통지 다음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p>

<p>(7) Für die Durchführung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im Sinne der Abs. 1 bis 6 ist, soweit diese für Pflichtversicherte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den Krankenversicherungsträgern obliegt (wie insbesondere die Feststellung der Versicherung, die Beitragsabfuhr und Beitragsabfuhr) die Sozialversicherungsanstal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zuständig. Soweit dieses Bundesgesetz oder das AMPFG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enthalten, gelten die vom jeweiligen Sozialversicherungsträger anzuwendenden sozialversicherungsrechtlichen Vorschriften.</p>	<p>(7) 상업 경제 사회보험기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실업보험의 이행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이점에 있어서 건강보험기관은 실업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실업보험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예컨대, 보험 확인, 보험료 징수 및 보험료 거절). 이와 관련하여 연방법 또는 노동시장정책-자금조달법(AMPFG)이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각 사회보험기관에 의하여 적용되는 사회보험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p>
<p>(8) Personen, die gemäß dem Bundesverfassungsgesetz über Kooperation und Solidarität bei der Entsendung von Einheiten und Einzelpersonen in das Ausland (KSE-BVG), BGBl. I Nr. 38/1997, in andere Staaten entsandt werden, sind zur Arbeitslosenversicherung zugelassen.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d Arbeit kann durch Verordnung weitere Personengruppen, die im Interesse Österreichs Hilfe im Ausland leisten, zur Arbeitslosenversicherung zulasse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dieser Personen beginnt mit Antragstellung, frühestens ab Beginn der Tätigkeit, und endet mit Ende der Tätigkeit. Für die Durchführung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dieser Personen ist die Wiener Gebietskrankenkasse zuständig.</p>	<p>(8) 협력과 연대에 관한 연방헌법에 따라서 부대 및 개인이 외국으로 파견되는 경우(KSE-BVG, BGBl. I Nr. 38/1997) 실업보험에 가입이 허용된다. 경제 및 노동부 장관은 규정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기타 인적 그룹에 대하여 실업보험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동 그룹에 대한 실업보험은 신청서의 제출일, 이르면 활동개시일부터 시작되며, 활동의 종료와 함께 실업보험은 종료된다. 빈의 지역건강보험기관(WGKK)은 동 그룹의 실업보험의 이행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p>
<p><b>Meldungen zur Arbeitslosenversicherung</b></p>	<p><b>실업보험에 대한 신고</b></p>
<p>§ 4.</p> <p>(1) Dienstgeber und selbständige Pecher sowie gemäß § 3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einbezogene Personen sind verpflichtet, dem zuständigen Sozialversicherungsträger alle für die Durchführung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maßgebenden Daten mitzuteilen.</p>	<p>제4조</p> <p>(1) 고용인과 자영업자 및 제3항에 따라서 실업보험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관할 사회보험기관에 실업보험의 이행에 대하여 중요한 모든 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p>

<p>(2) Die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 Person hat die gemäß Abs. 1 vorgeschriebenen Meldungen zu erstatten, wenn</p> <p>1. der Dienstgeber die Vorrechte der Exterritorialität genießt oder wenn dem Dienstgeber im Zusammenhang mit einem zwischenstaatlichen Vertrag oder der Mitgliedschaft Österreichs bei ein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 besondere Privilegien oder Immunitäten eingeräumt sind oder</p> <p>2. der Dienstgeber im Inland keine Betriebsstätte (Niederlassung, Geschäftsstelle, Niederlage) hat und für diesen keine Meldepflicht besteht.</p>	<p>(2) 다음의 경우 실업보험의무 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p> <p>1. 고용인이 치외법권의 특권을 가지거나 내지 국가 간 계약관계 또는 오스트리아 회원국의 관계에서 국제조직이 고용인에게 특별한 특권 내지 면책을 허용하는 경우 또는</p> <p>2. 고용인이 내국에 사업장(지점, 영업점, 창고)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사업장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p>
<p>(3) Die An- und Abmeldungen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er Personen zu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gelten auch als Meldungen zur Arbeitslosenversicherung.</p>	<p>(3) 법적 건강보험에 대한 실업보험의무자의 신청 및 탈퇴는 실업보험에 대한 보고로서 간주된다.</p>

ARTIKEL II Leistungen	제2절 이행
<p>§ 6.</p> <p>(1) Als Geldleistungen aus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werden gewähr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rbeitslosengeld;</li> <li>2. Notstandshilfe;</li> <li>3. Bevorschussung von Leistungen aus der Pensionsversicherung;</li> <li>4. Weiterbildungsgeld;</li> <li>5. Bildungsteilzeitgeld;</li> <li>6. Altersteilzeitgeld;</li> <li>6a. Teilpension – erweiterte Altersteilzeit;</li> <li>7. Übergangsgeld nach Altersteilzeit;</li> <li>8. Übergangsgeld;</li> <li>9. Umschulungsgeld.</li> </ol>	<p>제6조</p> <p>(1) 실업보험에 기인한 자금 이행으로서 승인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업급여</li> <li>2. 재난 지원금</li> <li>3. 연금보험에 기인한 이행 선급금</li> <li>4. 추가 교육 수당</li> <li>5. 교육 파트타임 수당</li> <li>6. 고령자 파트타임 수당</li> <li>6a. 부분 연금 - 확장된 고령자 파트타임</li> <li>7. 고령자 파트타임 후 임시 수당</li> <li>8. 임시 수당</li> <li>9. 재교육 수당</li> </ol>
<p>(2) Als Versicherungen aus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werden gewähr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rankenversicherung für Bezieher der Leistungen nach Abs. 1 Z 1 bis 5 sowie 7 bis 9;</li> <li>2. Unfallversicherung für Bezieher der Leistungen nach Abs. 1 Z 1, 2, 4, 5 und 9 nach Maßgabe des § 40a;</li> <li>3. Pensionsversicherung für Bezieher der Leistungen nach Abs. 1 Z 1, 2, 4, 5 und 7 bis 9;</li> </ol>	<p>(2) 실업보험에 기인한 보험으로서 인정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제1호 ~ 제5호 및 제7호 ~ 제9호에 따른 이행의 수령인에 대한 건강보험</li> <li>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와 제9호 및 제40a조에 따른 이행의 수령인에 대한 상해보험</li> <li>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와 제7호 ~ 제9호에 따른 이행의 수령인에 대한 연금보험</li> </ol>

<p>4. Krankenversicherung und Pensionsversicherung für Personen, die ausschließlich wegen Anrechnung des Einkommens des Partners oder der Partnerin keine Notstandshilfe erhalten.</p>	<p>4. 오로지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수입 산입으로 인하여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p>
<p>(3) Als Versicherungen aus Mittel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werden Krankenversicherung, Unfallversicherung und Pensionsversicherung für Bezieher einer Beihilfe zur Deckung des Lebensunterhaltes nach dem Arbeitsmarktservicegesetz (AMSG), BGBl. Nr. 313/1994, gewährt.</p>	<p>(3) 노동시장서비스법(AMSG, BGBl. Nr. 313/1994)에 따라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금 수령인에 대한 건강보험, 상해보험 및 연금보험은 실업보험 자금을 기인한 보험으로서 제공된다.</p>
<p>(4) Als Versicherungen aus Mitteln des Bundes werden Krankenversicherung und Pensionsversicherung für Dienstnehmer und Arbeitslose bei Sterbebegleitung, bei Begleitung von schwerst erkrankten Kindern und bei Pflegekarenz nach Maßgabe der §§ 29 bis 32 gewährt.</p>	<p>(4) 제29조 ~ 제32조에 따라서 안락사의 경우, 중증 어린이 환자를 보호하는 경우 및 간병보험유예기간의 경우 근로자 및 실업에 대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은 연방 자금을 기인한 보험으로서 제공된다.</p>
<p><b>Abschnitt 1</b> <b>Arbeitslosengeld</b></p> <p><b>Voraussetzungen des Anspruches</b></p>	<p><b>제1장</b> <b>실업급여</b></p> <p><b>청구권의 전제요건</b></p>
<p>§ 7.</p> <p>(1)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hat, wer</p> <p>1. der Arbeitsvermittlung zur Verfügung steht,</p> <p>2. die Anwartschaft erfüllt und</p> <p>3. die Bezugsdauer noch nicht erschöpft hat.</p>	<p><b>제7조</b></p> <p>(1) 다음의 사람은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p> <p>1. 직업소개가 가능한 사람,</p> <p>2. 실업급여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자 및</p> <p>3. 지급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는 자.</p>
<p>(2) Der Arbeitsvermittlung steht zur Verfügung, wer eine Beschäftigung aufnehmen kann und darf (Abs. 3) und arbeitsfähig (§ 8), arbeitswillig (§ 9) und arbeitslos (§ 12) ist.</p>	<p>(2) 직업소개는 직무를 시작할 수 있고, 승인되고(제3항), 직무능력(제8조), 직무의욕(제9조) 및 실업(제12조)인 사람에게 제공된다.</p>

<p>(3) Eine Beschäftigung aufnehmen kann und darf eine Person,</p> <p>1. die sich zur Aufnahme und Ausübung einer auf dem Arbeitsmarkt üblicherweise angebotenen, den gesetzlichen und kollektivvertraglichen Vorschriften entsprechenden zumutbaren versicherungspflichtigen Beschäftigung bereithält,</p> <p>2. die sich berechtigt im Bundesgebiet aufhält, um eine unselbständige Beschäftigung aufzunehmen und auszuüben sowie, wenn ihr eine unselbständige Beschäftigung nur nach Erteilung einer Beschäftigungsbewilligung gestattet ist, keine dieser gemäß § 4 Abs. 1 Z 3 des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es, BGBl. Nr. 218/1975, entgegenstehenden wichtigen Gründe wie insbesondere wiederholte Verstöße infolge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ohne Beschäftigungsbewilligung während der letzten zwölf Monate vorliegen.</p>	<p>(3) 다음의 사람은 직무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허용된다.</p> <p>1.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법률상 및 단체협약상 규정에 적합하고 무리가 없는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는 직무를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p> <p>2. 종속적인 직무가 단지 노동허가의 승인 후 허가된 경우 종속적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 영역에 체류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BGBl. Nr. 218/1975)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노동허가를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예컨대, 지난 12개월 동안 노동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직무행위를 위반한 경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p>
<p>(4) Von der Voraussetzung der Arbeitsfähigkeit ist für eine Bezugsdauer von längstens 78 Wochen abzusehen, wenn Arbeitslose berufliche Maßnahmen der Rehabilitation beendet haben und die Anwartschaft danach ohne Berücksichtigung von Zeiten, die vor Ende dieser Maßnahmen liegen, erfüllen sowie weder eine Leistung aus dem Versicherungsfall der geminderten Arbeitsfähigkeit oder der Erwerbsunfähigkeit beziehen noch die Anspruchsvoraussetzungen für eine derartige Leistung erfüllen.</p>	<p>(4) 만약 수급자가 직무상 재활치료를 종료하였고, 그 후 동 치료의 종료 이전에 존재한 시간의 고려 없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수급자가 경감된 노동능력 또는 생계불능의 보험사고로부터 이행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와 같은 이행에 대하여 청구권의 전제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닌 경우 최고 78주의 지급기간 동안 노동능력의 전제요건은 중지된다.</p>
<p>(5) Die Voraussetzungen des Abs. 3 Z 1 liegen</p> <p>1. während der Teilnahme am Freiwilligen Sozialjahr, am Freiwilligen Umweltschutzjahr, am Gedenkdienst und am Friedens- und Sozialdienst im Ausland nach dem Freiwilligengesetz nicht vor;</p> <p>2. während des Bezuges von Kinderbetreuungsgeld nur dann vor, wenn das Kind von einer anderen geeigneten Person oder in einer geeigneten Einrichtung betreut wird.</p>	<p>(5) 제3항 제1호의 전제요건은</p> <p>1. 자발적 법에 따라서 자발적 사회년, 자발적 환경보호년, 추모식 및 외국에서 평화와 사회봉사에 참가하는 동안 존재하지 않는다.</p> <p>2. 자녀양육수당이 지급되는 동안 존재한다. 다만, 자녀가 다른 적합한 사람에 의하여 또는 적합한 설비에서 양육되어야 한다.</p>

<p>(6) Personen, die gemäß § 5 AuslBG befristet beschäftigt sind, halten sich nach Beendigung ihrer Beschäftigung nicht berechtigt im Bundesgebiet auf, um eine unselbständige Beschäftigung aufzunehmen und auszuüben.</p>	<p>(6) 외국인 고용법(AuslBG) 제5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신의 직무가 종료된 후 연방 영역에서 독립적인 직무를 시작하고 행사하기 위한 체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p>
<p>(7) Als auf dem Arbeitsmarkt üblicherweise angebotene, den gesetzlichen und kollektivvertraglichen Voraussetzungen entsprechende Beschäftigung gilt ein Arbeitsverhältnis mit einer wöchentlichen Normalarbeitszeit von mindestens 20 Stunden. Personen mit Betreuungsverpflichtungen für Kinder bis zum vollendeten zehnten Lebensjahr oder behinderte Kinder, für die nachweislich keine längere Betreuungsmöglichkeit besteht, erfüllen die Voraussetzung des Abs. 3 Z 1 auch dann, wenn sie sich für ein Arbeitsverhältnis mit einer wöchentlichen Normalarbeitszeit von mindestens 16 Stunden bereithalten.</p>	<p>(7) 주당 최소 20시간의 표준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고용관계는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법률상 및 단체협약상 전제조건과 일치되는 고용으로서 간주된다. 또한, 10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증명된 바와 같이 장기간 보호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장애 아동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가진 사람은 주당 최소 16시간의 표준근로시간인 고용관계를 준비한 경우 제3항 제1호의 전제조건을 충족한다.</p>
<p>(8) Eine Person, die eine die Gesamtdauer von drei Monaten nicht überschreitende Ausbildung gemäß § 12 Abs. 4 macht oder an Maßnahmen der Nach- und Umschulung sowie zur Wiedereingliederung in den Arbeitsmarkt im Auftrag des Arbeitsmarktservice gemäß § 12 Abs. 5 teilnimmt, erfüllt die Voraussetzung des Abs. 3 Z 1 auch dann, wenn sie sich auf Grund der Ausbildung nur in einem geringeren als dem im Abs. 7 festgelegten zeitlichen Ausmaß für ein Arbeitsverhältnis bereithält. Die übrigen Voraussetzungen, insbesondere auch die Arbeitswilligkeit, müssen jedenfalls gegeben sein.</p>	<p>(8) 제12조 제4항에 따라서 전체 교육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제12조 제5항에 따라서 보수교육과 재교육 및 노동시장에 재편입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서비스의 위임에 근거하여 조치에 참가한 사람은 제3항 제1호의 전제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동 사람은 교육을 근거로 단지 근로관계에 대하여 제7항에 확정된 시간적인 범위보다 근소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의지와 같은 그 밖의 전제조건은 적어도 제공되어야 한다.</p>

Anwartschaft	성립요건
<p>§ 14.</p> <p>(1) Bei der erstmaligen Inanspruchnahme von Arbeitslosengeld ist die Anwartschaft erfüllt, wenn der Arbeitslose in den letzten 24 Monaten vor Geltendmachung des Anspruches (Rahmenfrist) insgesamt 52 Wochen im Inland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 war. Handelt es sich jedoch um einen Arbeitslosen, der das Arbeitslosengeld vor Vollendung des 25. Lebensjahres beantragt, ist die Anwartschaft auf Arbeitslosengeld auch dann erfüllt, wenn der Arbeitslose in den letzten zwölf Monaten vor Geltendmachung des Anspruches (Rahmenfrist) insgesamt 26 Wochen im Inland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 war.</p>	<p>제14조</p> <p>(1) 실업급여를 처음 행사하는 경우 수급자가 청구권의 행사이전 지난 24개월 동안(규제기간) 내국에서 전체 52주간 실업보험의 피보험관계를 형성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수급자가 25세 이전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수급자는 청구권의 행사 이전 지난 12개월 동안(규제기간) 내국에서 전체 26주간 실업보험의 피보험관계를 형성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2) Bei jeder weiteren Inanspruchnahme des Arbeitslosengeldes ist die Anwartschaft erfüllt, wenn der Arbeitslose in den letzten 12 Monaten vor Geltendmachung des Anspruches (Rahmenfrist) insgesamt 28 Wochen im Inland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 war. Die Anwartschaft ist im Falle einer weiteren Inanspruchnahme auch dann erfüllt, wenn der Arbeitslose die Anwartschaft gemäß § 14 Abs. 1 erster Satz erfüllt.</p>	<p>(2) 추가 실업급여가 청구되는 경우 수급자가 청구권의 행사이전 지난 12개월 동안(규제기간) 전체 28주간 내국에서 실업보험의 피보험관계를 형성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성립요건은 충족된다. 또한, 수급자가 제14조 제1항 제1문에 따라서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역시 추가 청구권의 행사에서 성립요건은 충족된다.</p>
<p>(3) In Zeiten empfindlicher Arbeitslosigkeit kann durch Verordnung des Bundesministers für soziale Verwaltung für einzelne Berufsgruppen, in denen die Beschäftigungslage besonders ungünstig ist, bestimmt werden, daß die Anwartschaft auch dann erfüllt ist, wenn der Arbeitslose in den letzten 24 Monaten vor Geltendmachung des Anspruches auf Arbeitslosengeld im Inland insgesamt 26 Wochen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 war.</p>	<p>(3) 사회행정에 관한 연방장관의 규정은 고통스러운 실업 동안 고용상태가 특별히 불합리한 개개 직업그룹에 대하여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실업수당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 이전 지난 24개월 동안 내국에서 전체 26주간 실업보험의무를 형성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4) Auf die Anwartschaft sind folgende im Inland zurückgelegte oder auf Grund inländischer Rechtsvorschriften erworbene Zeiten anzurechnen:</p>	<p>(4) 성립요건은 내국에서 다음의 보험가입시간 또는 내국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시간이 고려된다.</p>

<p>a) Zeiten, die der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 unterlagen, sowie sonstige Zeiten der Versicherung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p> <p>b) die Zeit des Präsenz- oder Ausbildungs- oder Zivildienstes oder Bezuges von Kinderbetreuungsgeld, wenn innerhalb der für die Anwartschaft maßgeblichen Rahmenfrist mindestens 14 Wochen sonstige Anwartschaftszeiten liegen;</p> <p>c) Zeiten des Bezuges von Wochengeld oder Krankengeld aus einer Krankenversicherung auf Grund eines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p> <p>d) Zeiten einer krankenversicherungspflichtigen Beschäftigung als Lehrling;</p> <p>e) Zeiten, für die ein Sicherungsbeitrag gemäß § 5d AMPFG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148/1998 entrichtet wurde;</p> <p>f) Zeiten einer gemäß § 1 Abs. 2 lit. e vo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 ausgenommenen krankenversicherungspflichtigen Erwerbstätigkeit;</p> <p>g) Zeiten der Teilnahme an beruflichen Maßnahmen der Rehabilitation, wenn diese nicht ungerechtfertigt vorzeitig beendet wurden, nach Beendigung dieser Maßnahmen.</p>	<p>a) 실업보험의무에 가입한 시간 및 실업보험의 그 밖의 보험 시간</p> <p>b) 군복무, 교육복무 또는 사회복지무 내지 육아수당 지급시간, 다만 성립요건에 대하여 중요한 규정기간 내 최소 14주 동안 그 밖의 성립요건기간이 존재하여야 한다.</p> <p>c) 실업보험의무를 형성하는 노동관계로 인하여 건강보험으로부터 출산수당 또는 질병수당의 지급시간</p> <p>d) 견습생으로서 건강보험의무를 형성하는 직무시간</p> <p>e) 연방법 BGBl. I Nr. 148/1998 버전의 노동시장정책-자금조달법(AMPFG) 제5d에 따라서 보호보험료가 납부된 시간</p> <p>f) 제1조 제2항 e에 따라서 실업보험의무가 제외되면서 건강보험의무를 형성하는 생계활동 시간</p> <p>g) 직업상 재활치료의 조치에 참가하는 시간. 다만 동 조치의 종료 후 재활치료는 부당하게 사전에 종료되지 않았어야 한다.</p>
<p>(5) Ausländische Beschäftigungs- oder Versicherungszeiten sind auf die Anwartschaft anzurechnen, soweit dies durch zwischenstaatliche Abkommen oder internationale Verträge geregelt ist.</p>	<p>(5) 성립요건이 국가간 협정 또는 국제적인 계약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외국인 고용 또는 보험 시간은 성립요건으로부터 계산된다.</p>
<p>(6) Die in den Abs. 4 und 5 angeführten Zeiten dürfen bei der Ermittlung der Anwartschaft nur einmal berücksichtigt werden.</p>	<p>(6) 성립요건을 확정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열거된 시간은 단지 한 번만 고려된다.</p>

<p>(7) Wird nach einem Bezug von Weiterbildungsgeld oder Bildungsteilzeitgeld Arbeitslosengeld in Anspruch genommen, so gilt dies als weitere Inanspruchnahme im Sinne des Abs. 2.</p>	<p>(7) 추가교육수당 또는 교육파트타임수당의 지급 후 실업급여가 청구된 경우 제2항에 규정된 추가 청구로서 간주된다.</p>
<p>(8) Sonstige Zeiten der Versicherung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gemäß Abs. 4 lit. a sind auf die Anwartschaft nur anzurechnen, soweit für diese Beiträge entrichtet wurden.</p>	<p>(8) 제4항 a에 따른 실업보험의 그 밖의 보험시간은 성립요건에 대한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성립요건에 대해서만 계산된다.</p>
<p><b>Ruhen des Arbeitslosengeldes</b></p>	<p><b>실업급여의 중지</b></p>
<p>§ 16.</p> <p>(1) Der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ruht während</p> <p>a) des Bezuges von Kranken- oder Wochengeld sowie bei Nichtgewährung von Krankengeld gemäß § 142 Abs. 1 des Allgemeinen Sozialversicherungsgesetzes,</p> <p>b) während einer Bezugsfortzahlung nach dem Ende einer öffentlichen Funktion,</p> <p>c) der Unterbringung des Arbeitslosen in einer Heil- oder Pflegeanstalt,</p> <p>d) des Zeitraumes, für den Schadenersatz nach § 25 Abs. 2 der Insolvenzordnung (IO), RGBI. Nr. 337/1914, gebührt,</p> <p>e) des Zeitraumes, für den Schadenersatz nach § 20d der Ausgleichsordnung (AO), BGBl. II Nr. 221/1934, gebührt,</p> <p>f) des Bezuges von Entgelt gemäß § 5 des Entgeltfortzahlungsgesetzes, BGBl. Nr. 399/1974,</p> <p>g) des Aufenthaltes im Ausland, soweit nicht Abs. 3 oder Regelungen auf Grund internationaler Verträge anzuwenden sind,</p> <p>h) des Präsenz- oder Ausbildungs- oder Zivildienstes,</p>	<p><b>제16조</b></p> <p>(1)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기간 동안 중지된다.</p> <p>a) 질병수당 또는 출산수당이 지급되는 동안 및 일반적인 사회보험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서 질병수당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p> <p>b) 공적기능의 종료 후 지급계속이 이행되는 동안,</p> <p>c) 수급자가 치료 또는 간병기관에 입원하는 동안,</p> <p>d) 파산법(RGBI. Nr. 337/1914) 제25조 제2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p> <p>e) 보상규정(BGBl. II Nr. 221/1934) 제20d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p> <p>f) 보상계속지급법(BGBl. Nr. 399/1974) 제5조에 따라서 보상의 지급기간 동안,</p> <p>g)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점에 있어서 국제 계약을 근거로 제3항 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p> <p>h) 군복무, 교육복무 또는 사회복무 기간 동안,</p>

<p>i) des Bezuges von Pflegekarengeld,</p>	<p>i) 간병보호기간급여의 이행 기간 동안,</p>
<p>j) des Bezuges von Weiterbildungsgeld oder Bildungsteilzeitgeld oder eines Fachkräftestipendiums,</p>	<p>j) 추가교육수당 또는 부분교육수당 내지 전문인력 장학금의 이행 기간 동안,</p>
<p>k) des Zeitraumes, für den Kündigungsentschädigung gebührt,</p>	<p>k) 해지보상금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p>
<p>l) des Zeitraumes, für den Anspruch auf eine Ersatzleistung (Entschädigung, Abfindung) für Urlaubsentgelt nach dem Urlaubsgesetz, BGBl. Nr. 390/1976,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oder eine Urlaubersatzleistung nach dem Bauarbeiter-Urlaubs- und Abfertigungsgesetz (BUAG), BGBl. Nr. 414/1972,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besteht oder eine Urlaubsabfindung nach dem BUAG gewährt wird, nach Maßgabe des Abs. 4,</p>	<p>l) 휴가법(BGBl. Nr. 390/1976)에 따라서 휴가급여에 대하여 각 적용되는 버전에서 보상(배상금,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 또는 건설 노동자, 휴가 및 퇴직법(BGBl. Nr. 414/1972)에 따라서 휴가 보상이 존재하는 기간 내지 건설 노동자, 휴가 및 퇴직법 제4항에 따라서 휴가처리가 보장되는 기간 동안,</p>
<p>m) des Bezuges von Leistungen nach dem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ung von Überbrückungshilfen an ehemalige Bundesbedienstete, BGBl. Nr. 174/1963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p>	<p>m) 전직 연방공무원에 대한 임시 지원금의 승인에 관한 연방법(BGBl. Nr. 174/1963)에 따라서 이행 지급기간 동안</p>
<p>n) des Bezuges von Übergangsgeld nach Altersteilzeit oder Übergangsgeld,</p>	<p>n) 노령파트타임 또는 임시 수당에 따라서 임시 수당의 지급 기간 동안</p>
<p>o) des Bezuges von Rehabilitationsgeld oder von Übergangsgeld aus der Unfallversicherung gemäß § 199 ASVG,</p>	<p>o) 일반사회보장법 제199조에 따라서 상해보험에 기인한 재활수당 또는 임시수당의 지급 기간 동안,</p>
<p>p) des Bezuges von Umschulungsgeld sowie während eines Verlustes des Anspruches auf Umschulungsgeld,</p>	<p>p) 재교육수당의 지급 기간 동안 또는 재교육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는 기간 동안,</p>
<p>q) des Bezuges von Überbrückungsgeld gemäß § 131 Bauarbeiter-Urlaubs- und Abfertigungsgesetz.</p>	<p>q) 건설노동자, 휴가 및 퇴직법 제131조에 따라서 전환기 수당의 지급 기간 동안.</p>

<p>(2) Ist der Anspruch auf Kündigungsentschädigung strittig, oder wird Kündigungsentschädigung aus sonstigen Gründen nicht bezahlt, wird das Arbeitslosengeld (die Notstandshilfe) für diesen Zeitraum als Vorschuß auf die Kündigungsentschädigung gewährt. Wird der Arbeitgeber von der Gewährung des Vorschusses verständigt, so geht der Anspruch des Arbeitslosen auf die fällige Kündigungsentschädigung für denselben Zeitraum auf den Bund zugunste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in der Höhe des als Arbeitslosengeld (Notstandshilfe) gewährten Vorschusses über und ist vom Arbeitgeber unbeschadet von Übertragungen, Verpfändungen oder Pfändungen der Kündigungsentschädigung vorrangig zu befriedigen. Das Recht auf gerichtliche Durchsetzung dieses Anspruches verbleibt jedoch beim Arbeitnehmer. Wird Insolvenz-Entgelt nach dem Insolvenz-Entgeltsicherungsgesetz, BGBl. Nr. 324/1977, für die Kündigungsentschädigung beantragt, so gilt das Gleiche hinsichtlich dieses Anspruches auf Insolvenz-Entgelt, und der Insolvenz-Entgelt-Fonds tritt an die Stelle des Arbeitgebers. Findet der Übergang statt, so ist der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unter Bedachtnahme auf Abs. 1 lit. k neu zu bemessen. Dem Anspruch auf Kündigungsentschädigung steht der Anspruch auf Schadenersatz nach § 25 Abs. 2 IO bzw. nach § 20d AO gleich, wobei der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unter Bedachtnahme auf Abs. 1 lit. d bzw. Abs. 1 lit. e neu zu bemessen ist.</p>	<p>(2) 해고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해고보상금이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재난 지원금)는 해고보상금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제공된다. 고용인이 선급금의 승인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되는 해고보상금에 대한 수급자의 청구권은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실업급여(재난 지원금)로서 제공된 선급금액이 연방으로 이전 되고 그리고 고용인은 해고보상금의 양도, 담보 또는 질권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동 청구권의 재판상 이행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파산-보상금보호법(BGBl. Nr. 324/1977)에 따라서 해고보상금에 대한 파산-보상금이 신청된 경우 파산-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파산-보상금-펀드는 고용인에게 주어진다. 이행이 진행되는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은 제1항 k의 고려 하에 새로이 산정된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은 파산법 제25조 제2항 또는 보상규정 제20d조에 따라서 해고보상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존재한다. 동시에 제1항 d 또는 제1항 e의 고려 하에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은 새로이 산정된다.</p>
<p>(3) Auf Antrag des Arbeitslosen ist das Ruhen des Arbeitslosengeldes gemäß Abs. 1 lit. g bei Vorliegen berücksichtigungswürdiger Umstände nach Anhörung des Regionalbeirates bis zu drei Monate während eines Leistungsanspruches (§ 18) nachzusehen. Berücksichtigungswürdige Umstände sind Umstände, die im Interesse der Beendigung der Arbeitslosigkeit gelegen sind, insbesondere wenn sich der Arbeitslose ins Ausland begibt, um nachweislich einen Arbeitsplatz zu suchen oder um sich nachweislich beim Arbeitgeber vorzustellen oder um sich einer Ausbildung zu unterziehen, oder Umstände, die auf zwingenden familiären Gründen beruhen.</p>	<p>(3) 지역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서 고려 가능한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 g에 따른 실업급여의 중지(제18조) 이행청구기간 3개월까지 확인될 수 있다. 고려 가능한 상태는 실업종료의 이해관계에 호의적인 것을 말한다. 특히, 수급자가 외국에서 입증 가능한 직무를 찾기 위하여, 입증 가능한 고용인 앞에서 면접을 보기 위하여 또는 교육을 이행 위하여 외국으로 가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가족상의 이유로 인한 상태를 말한다.</p>

<p>(4) Besteht Anspruch auf eine Ersatzleistung (Entschädigung, Abfindung) für Urlaubsentgelt (Urlaubersatzleistung) im Zeitpunkt der Auflösung des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beginnt der Ruhenszeitraum mit dem Ende des anspruchsbegründend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besteht jedoch auch Anspruch auf Kündigungsentschädigung mit dem Ende des Zeitraumes, für den Kündigungsentschädigung gebührt. Ist der Anspruch auf eine Ersatzleistung (Entschädigung, Abfindung) für Urlaubsentgelt (Urlaubersatzleistung) strittig oder wird eine Ersatzleistung (Entschädigung, Abfindung) für Urlaubsentgelt (Urlaubersatzleistung) aus sonstigen Gründen (zB Konkurs des Arbeitgebers) nicht bezahlt, so ist Abs. 2 sinngemäß anzuwenden. Wird hingegen eine Urlaubsabfindung nach dem BUAG gewährt, beginnt der Ruhenszeitraum mit dem achten Tag, der auf die Zahlbarstellung durch die Urlaubs- und Abfertigungskasse folgt. Ansprüche auf Tagesteile bleiben immer außer Betracht.</p>	<p>(4)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에 휴가보상에 대하여 보상(배상금, 보상금)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 중지기간은 청구권이 형성되는 고용관계의 종료와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해고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은 해고보상금을 인정하는 기간의 종료와 함께 존재한다. 휴가보상에 대하여 보상(배상금, 보상금) 청구권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 또는 휴가보상에 대하여 보상(배상금, 보상금) 청구권이 그 밖의 이유(예, 고용인의 파산)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제2항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건설노동자-휴가 및 퇴직법에 따라서 휴가보상이 제공되는 경우 중지기간은 휴가 및 퇴직기금에 의하여 지급장소가 정해진 후 8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하루 시간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항상 고려되지 않는다.</p>
<p>(5)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d Arbeit kann durch Verordnung für bestimmte Wirtschaftszweige festlegen, dass das Arbeitslosengeld im Anschluss an die Beendigung des Dienstverhältnisses für längstens 14 Tage ruht, wenn beschäftigungsverlängernde Maßnahmen zum Ausgleich von Saisonschwankungen durch den Verbrauch eines Teiles der im laufenden Urlaubsjahr erworbenen Urlaubsanspruches und den Ausgleich eines Teiles der geleisteten Überstunden jeweils am Ende des Dienstverhältnisses möglich sind und eine Aufwands-/ Ertragsrechnung im Periodenvergleich keine oder nur eine unzureichende Erhöhung des Deckungsgrades zwischen Auszahlungen und Beitragseinnahmen in der Gebarung Arbeitsmarktpolitik ergibt. In der Verordnung ist weiters festzulegen, dass sich der Ruhenszeitraum um zur Verlängerung des Dienstverhältnisses herangezogene Urlaubs- und Zeitausgleichstage und um einen allfälligen Ruhenszeitraum gemäß Abs. 1 lit. I verringert. Bei der Umrechnung von Überstunden in Tage ist davon auszugehen, dass acht Überstunden einem Tag</p>	<p>(5) 연방 경제 및 노동부 장관은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실업급여가 고용관계의 종료에서 최고 14일 동안 중지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절적 변동의 보상에 관한 고용연장조치는 현재 휴가연도에 취득한 휴가를 받을 권리의 부분 사용에 의하여 그리고 이행된 초과근무 부분의 보상에 의하여 각 고용관계의 종료에서 가능하다. 또한, 기간 비교에서 비용과 수익계산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단지 지급과 보험료 수입간의 우열의 법칙의 불충분한 증액은 노동시장 정책의 집행에서 발생된다. 그 밖에 규정은 고용관계의 연장과 관계된 휴가 및 시간보상일에 대한 중지기간 및 제1항 I에 따라서 발생가능한 중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초과 시간을 하루로 환산하는 경우 8시간 초과는 하루로 간주되고 그리고 일부 요일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른 중지기간의 종료 후 다른 중지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중지기간은 고용관계의 종료와 함께 시작된다.</p>

entsprechen und Teile von Tagen außer Betracht bleiben. Der Ruhenszeitraum hat mit dem Ende des Dienstverhältnisses, bei Vorliegen anderer Ruhensgründe nach dem Ende der anderen Ruhenszeiträume, zu beginnen.

Beginn des Bezuges	지급 시작
<p>§ 17.</p> <p>(1) Sind sämtliche Voraussetzungen für den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erfüllt und ruht der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nicht gemäß § 16, gebührt das Arbeitslosengeld ab dem Tag der Geltendmachung, frühestens ab dem Eintritt der Arbeitslosigkeit. Der Anspruch gilt rückwirkend ab dem Eintritt der Arbeitslosigkeit</p> <p>1. wenn diese ab einem Samstag, Sonntag oder gesetzlichen Feiertag besteht und die Geltendmachung am ersten darauf folgenden Werktag erfolgt oder</p> <p>2. wenn die Arbeitslosmeldung bereits vor Eintritt der Arbeitslosigkeit bei der zuständigen regionalen Geschäftsstelle des Arbeitsmarktservice eingelangt ist und die Geltendmachung sowie eine gemäß § 46 Abs. 1 erforderliche persönliche Vorsprache binnen 10 Tagen nach Eintritt der Arbeitslosigkeit erfolgt, soweit das Arbeitsmarktservice nicht hinsichtlich der persönlichen Vorsprache Abweichendes verfügt hat.</p>	<p><b>제17조</b></p> <p>(1) 실업급여의 청구권에 대한 모든 전제요건이 충족되고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제16조에 따라서 중지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이행일부터, 이르면 실업의 발생일부터, 인정된다. 다음의 경우 청구권은 실업상태의 발생일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된다.</p> <p>1. 실업상태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부터 발생되고 그리고 이행이 최초 그 다음 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p> <p>2. 공실업신고가 이미 실업상태 이전에 관할 지역 노동시장서비스의 영업소에 도달하는 경우 그리고 이행 및 제46조 제1항에 따라서 필요한 개인 방문이 실업상태의 발생 이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이점에 있어서 노동시장서비스가 개인적인 방문과 관련하여 다른 제한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p>
<p>(2) Die Frist zur Geltendmachung verlängert sich um Zeiträume, während denen der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gemäß § 16 Abs. 1 ruht, ausgenommen bei Auslandsaufenthalt gemäß lit. g. Ruht der Anspruch oder ist der Bezug des Arbeitslosengeldes unterbrochen, so gebührt das Arbeitslosengeld ab dem Tag der Wiedermeldung oder neuerlichen Geltendmachung nach Maßgabe des § 46 Abs. 5.</p>	<p>(2) 이행 기간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중지되는 기간 동안 연장되며, g에 따라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제외된다. 청구권의 중지 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제46조 제5항에 따라서 재신청 또는 새로운 이행일부터 인정된다.</p>

<p>(3) Die Arbeitslosmeldung hat zumindest den Namen, die Sozialversicherungsnummer, die Anschrift, den erlernten Beruf, die zuletzt ausgeübte Beschäftigung und den Zeitpunkt der Auflös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sowie die Angabe, auf welchem Weg eine rasche Kontaktaufnahme durch das Arbeitsmarktservice möglich ist (e-mail-Adresse, Faxnummer, Telefonnummer) zu enthalten. Für die Arbeitslosmeldung ist das bundeseinheitliche Meldeformular zu verwenden. Die Meldung gilt erst dann als erstattet, wenn das ausgefüllte Meldeformular bei der regionalen Geschäftsstelle eingelangt ist. Ist die Meldung aus Gründen, die nicht in der Verantwortung der Meldung erstattenden Person liegen, unvollständig, verspätet oder gar nicht eingelangt, so gilt die Meldung mit dem Zeitpunkt der nachweislichen Abgabe (Absendung) der Meldung als erstattet. Das Einlangen der Meldung ist zu bestätigen.</p>	<p>(3) 실업신고는 최소한 이름, 사회보험번호, 주소, 습득한 직업, 마지막에 이행한 직무 및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 그리고 노동시장서비스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실업신고는 연방의 통일적인 신고양식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작성된 신고양식이 지역 영업소에 도달되는 경우 신고는 처음 행해진 것으로서 간주된다. 신고가 신고자의 책임 없이 불충분하게 지연되거나 또는 전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신고는 신고의 제출 가능한 시점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신고의 도달은 확인된다.</p>
<p>(4) Ist die Unterlassung einer rechtzeitigen Antragstellung auf einen Fehler der Behörde, der Amtshaftungsfolgen auslösen kann, wie zum Beispiel eine mangelnde oder unrichtige Auskunft, zurück zu führen, so kann die zuständige Landesgeschäftsstelle die regionale Geschäftsstelle amtswegi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Zweckmäßigkeit und der Erfolgsaussichten in einem Amtshaftungsverfahren zu einer Zuerkennung des Arbeitslosengeldes ab einem früheren Zeitpunkt, ab dem die übrigen Voraussetzungen für die Gewährung der Leistung vorliegen, ermächtigen.</p>	<p>(4) 적합한 시기에 행해진 신청이 공적책임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관공서의 잘못된 조치(예컨대, 불충분하거나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우 관할 주영업소는 실업급여의 승인에 대한 공적책임소송에서 합목적과 성공가능성의 고려하에 이행의 제공에 대한 그 밖의 전제요건이 존재하는 이전 시점부터 지역 영업소에 공무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p><b>Dauer des Bezuges</b></p>	<p><b>지급 기간</b></p>
<p>§ 18.</p> <p>(1) Das Arbeitslosengeld wird für 20 Wochen gewährt. Es wird für 30 Wochen gewährt, wenn vor Geltendmachung des Anspruches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en in der Dauer von 156 Wochen nachgewiesen werden.</p>	<p><b>제18조</b></p> <p>(1) 실업급여는 20주 동안 제공된다. 청구의 이행 이전 실업보험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직무가 156주 동안 이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30주 동안 제공된다.</p>

<p>(2) Die Bezugsdauer erhöht sich</p> <p>a) auf 39 Wochen, wenn in den letzten zehn Jahren vor Geltendmachung des Anspruches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en von 312 Wochen nachgewiesen werden und der Arbeitslose bei Geltendmachung des Anspruches das 40. Lebensjahr vollendet hat,</p> <p>b) auf 52 Wochen, wenn in den letzten 15 Jahren vor der Geltendmachung des Anspruches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en von 468 Wochen nachgewiesen werden und der Arbeitslose bei Geltendmachung des Anspruches das 50. Lebensjahr vollendet hat,</p> <p>c) auf 78 Wochen nach Absolvierung einer beruflichen Maßnahme der Rehabilitation aus der gesetzlichen Sozialversicherung, die nach de</p>	<p>(2) 지급기간은</p> <p>a) 39주까지 증가된다. 다만, 청구권의 행사 이전 지난 10년 동안 실업보험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직무가 312주 동안 이행되었고 그리고 수급자는 청구권의 행사에서 40세에 도달하여야 한다.</p> <p>b) 52주까지 증가된다. 다만, 청구권의 행사 이전 지난 15년 동안 실업보험의무관계를 형성하는 직무가 468주 동안 이행되었고 그리고 수급자는 청구권의 행사에서 50세에 도달하여야 한다.</p> <p>c)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된 법정사회보험에 기인한 직업상 재활치료에 대한 조치의 종료 후 78 주까지 증가된다.</p>
<p>(3) Bei der Festsetzung der Bezugsdauer sind die im § 14 Abs. 4 angeführten Zeiten zu berücksichtigen.</p>	<p>(3) 지급기간이 결정되는 경우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은 고려된다.</p>
<p>(4) Die Bezugsdauer verlängert sich um die Dauer der Teilnahme an Maßnahmen gemäß § 12 Abs. 5.</p>	<p>(4) 지급기간은 제12조 제5항에 따라서 조치에 참가한 기간까지 연장된다.</p>
<p>(5) Die Bezugsdauer verlängert sich um höchstens 156 Wochen um Zeiten, in denen der Arbeitslose an einer Maßnahme im Sinne des Abs. 6 teilnimmt. Diese Verlängerung kann um höchstens insgesamt 209 Wochen erfolgen,</p> <p>1. wenn die Maßnahme in einer Ausbildung besteht, für die gesetzliche oder auf gesetzlicher Grundlage erlassene Vorschriften eine längere Dauer vorsehen, für die Zeit dieser Ausbildung;</p> <p>2. wenn der Arbeitslose das 50. Lebensjahr vollendet hat und trotz Teilnahme an Maßnahmen im Sinne des Abs. 6 die Arbeitslosigkeit noch immer fort dauert oder wieder eingetreten ist.</p>	<p>(5) 지급기간은 수급자가 제6조에 규정된 조치에 참가하는 기간까지 최고 156주까지 연장된다. 동 연장은 다음의 경우 최고 209주까지 가능하다.</p> <p>1. 조치가 교육과 관계되는 경우, 이 때 법적 또는 법률상 근거를 승인하는 규정이 보다 긴 기간을 교육에 의도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p> <p>2. 수급자가 50세에 도달 하고 그리고 제6항에 규정된 조치에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여전히 지속되거나 또는 다시 발생하는 경우.</p>

Für Maßnahmen im Sinne des Abs. 6 kann das Ruhen des Arbeitslosengeldes wegen Ausbildung im Ausland (§ 16 Abs. 3) in besonders gelagerten Fällen über drei Monate hinaus nachgesehen werden.

제6항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해외 교육(제16조 제3항)으로 인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 실업급여의 증지는 검사될 수 있다.

(6) Eine Maßnahme im Sinne des Abs. 5 ist von der Landesgeschäftsstelle anzuerkennen, wenn

(6) 다음의 경우 제5항에 규정된 조치는 주영업소에 의하여 승인된다.

a) ein oder mehrere Unternehmen für arbeitslos gewordene Arbeitnehmer eine Einrichtung bereitstellen, die für die Planung und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r in lit. b genannten Art nach einem einheitlichen Konzept verantwortlich ist und diesem Konzept von den für den Wirtschaftszweig in Betracht kommenden kollektivvertragsfähigen Körperschaften der Dienstgeber und Dienstnehmer zugestimmt worden ist,

a) 하나 또는 다수의 기업이 실업상태가 된 근로자를 위하여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동 설비는 통일적인 구상에 따라서 b에 규정된 종류의 조치의 계획과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그리고 동 구상이 경제 부문에 대하여 고려되는 고용인과 근로자 단체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b) es sich um Maßnahmen handelt, die dem Arbeitslosen die Wiedererlangung eines Arbeitsplatzes insbesondere durch eine Ausbildung oder Weiterbildung im Rahmen des Unternehmens, der Einrichtung oder von anderen Schulungseinrichtungen erleichtern sollen und nach dem Inhalt und nach den angestrebten Zielen den arbeitsmarktpolitischen Erfordernissen dienen,

b) 조치에 관계되는 경우, 다만 동 조치는 수급자에게 기업, 설비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범위 내에서 교육 또는 재교육에 의하여 일자리의 회복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용과 희망하는 목표에 따라서 노동시장정책상 필요한 조건에 이용되어야 한다.

c) die Maßnahme eine Vollausslastung des Arbeitslosen gleich einem Arbeitnehmer unter Berücksichtigung von Freizeiten, üblichen Urlaubsansprüchen u. dgl. bewirkt, oder bei Arbeitslosen, die das 50. Lebensjahr vollendet haben, an die Stelle der Vollausslastung eine intensive Betreuung durch die Einrichtung mit dem Ziel der Beendigung der Arbeitslosigkeit tritt,

c) 조치가 자유시간, 일상의 휴가 청구권 등의 고려 하에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수급자의 완전한 최고능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50세에 도달한 수급자의 경우 완전한 최고능력의 자리에서 실업상태의 종료와 함께 기관에 의하여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d) die Realisierung des Konzeptes unter Bedachtnahme auf lit. a und b durch ausreichende Bereitstellung der finanziellen, organisatorischen, sachlichen und personellen Voraussetzungen von der Einrichtung sichergestellt ist, und

d) a와 b의 고려 하에 구상의 실현은 기관의 경제적, 조직적, 물질적 및 인적 전제조건이 충분히 준비되도록 보장되는 경우

<p>e) dem Arbeitslosen eine Zuschußleistung vom Träger der Einrichtung während seiner Zugehörigkeit zu ihr gewährt wird.</p>	<p>e) 기관의 담당자는 수급자가 자기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동안 지원금의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p>
<p>(7) Anstelle eines Unternehmens kann die Einrichtung im Sinne des Abs. 6 lit. a auch bereitgestellt werden</p> <p>1. durch eine Gebietskörperschaft oder eine andere geeignete juristische Person, wenn ein Unternehmen infolge von Insolvenztatbeständen im Sinne des § 1 Abs. 1 des Insolvenz-Entgeltsicherungsgesetzes, BGBl. Nr. 324/1977, oder aus anderen schwerwiegenden Gründen dazu nicht in der Lage ist, oder</p> <p>2. durch die gesetzliche Interessenvertretung der Arbeitgeber im Zusammenhang mit wirtschaftlichen Schwierigkeiten in bestimmten Wirtschaftszweigen oder</p> <p>3. durch die kollektivvertragsfähigen Körperschaften der Arbeitgeber oder auch der Arbeitnehmer im Zusammenhang mit außergewöhnlichen wirtschaftlichen Schwierigkeiten vor allem zur Ausbildung junger Arbeitsloser.</p>	<p>(7) 기업 대신 제6항 a에 규정된 기관은 다음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적합한 법인에 의하여, 다만 기업은 파산-소득보장법(BGBl. Nr. 324/1977)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파산에 대한 구성요건의 결과로서 또는 다른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제공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p> <p>2. 특정 경제부문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된 고용인의 법률상 이익 대리에 의하여</p> <p>3. 무엇보다 청년 수급자의 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된 고용인 또는 근로자의 단체계약 능력을 가진 단체.</p>
<p>(8) Vor der Festsetzung der Zuschussleistung im Sinne des Abs. 6 lit. e sind die in Betracht kommenden kollektivvertraglichen Körperschaften der Dienstgeber und der Dienstnehmer anzuhören, wenn dieser nicht bereits im Rahmen des Konzeptes gemäß Abs. 6 lit. a zugestimmt worden ist.</p>	<p>(8) 제6항 e에 규정된 보조금 이행의 확정 전에 고용인과 근로자의 단체협약과 관계된 단체는 인지되어야 있다. 다만 이것은 제6항에 의거한 개념의 범위 내에서 이미 승인되지 않았어야 한다.</p>
<p>(9) Die Maßnahme ist mit Bescheid anzuerkennen, wobei nur das betreffende Unternehmen oder die Einrichtung, sofern sie Rechtspersönlichkeit besitzt, Parteistellung hat. Die Anerkennung der Maßnahme kann mit Auflagen verbunden werden, die der Sicherstellung der Einhaltung der gesetzlichen Voraussetzungen dienen.</p>	<p>(9)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이 법인격과 함께 당사자 자격을 소유하는 경우 조치는 결정으로서 인정된다. 조치의 승인은 법적 전제요건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과 관계될 수 있다.</p>

<p>(10) Arbeitslosengeld mit Verlängerung der Bezugsdauer gemäß Abs. 5 ist zu gewähren, wenn der Arbeitslose an einer von der Landesgeschäftsstelle anerkannten Maßnahme einer Einrichtung der beruflichen Rehabilitation teilnimmt. Die Maßnahme ist bei Erfüllung der Voraussetzungen des Abs. 6 lit. b und c mit Bescheid anzuerkennen, wobei nur die Einrichtung, die sie durchführt, Parteistellung hat.</p>	<p>(10) 수급자가 직업상 재활치료기관의 주영업소로부터 인정된 조치에 참가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제6항 b 및 c의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치가 이행되는 설비가 당사자 자격을 소유하면서 조치는 결정과 함께 인정될 수 있다.</p>
<p><b>Ausmaß des Arbeitslosengeldes</b></p>	<p><b>실업급여의 범위</b></p>
<p>§ 20.</p>	<p><b>제20조</b></p>
<p>(1) Das Arbeitslosengeld besteht aus dem Grundbetrag und den Familienzuschlägen sowie einem allfälligen Ergänzungsbetrag.</p>	<p>(1) 실업급여는 기본금액, 가족수당 및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보조금액으로 구성된다.</p>
<p>(2) Familienzuschläge sind für Kinder und Enkel, Stiefkinder, Wahlkinder und Pflegekinder zu gewähren, wenn der Arbeitslose zum Unterhalt des jeweiligen Angehörigen tatsächlich wesentlich beiträgt und für diesen ein Anspruch auf Familienbeihilfe besteht.</p>	<p>(2) 수급자가 각 구성원의 부양을 위하여 실제로 중요하게 기여하고 구성원을 위하여 가족지원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와 손자, 의붓 자녀, 입양 자녀 및 수양 자녀에 대하여 제공된다.</p>
<p>(3) Familienzuschläge sind für Ehegatten (Lebensgefährten), die kein Einkommen erzielen, das die Geringfügigkeitsgrenze des § 5 Abs. 2 ASVG für den Kalendermonat übersteigt, zu gewähren, wenn der Arbeitslose zu dessen Unterhalt tatsächlich wesentlich beiträgt und mindestens ein Familienzuschlag gemäß Abs. 2 für eine im gemeinsamen Haushalt mit dem Arbeitslosen lebende oder der Obsorge des Arbeitslosen oder des Ehegatten (Lebensgefährten) obliegende Person, die minderjährig ist oder für die eine Familienbeihilfe wegen Behinderung gebührt, gewährt wird.</p>	<p>(3) 만약 수급자가 배우자의 생계를 위하여 실제로 중요하게 기여하고 그리고 최소한 수급자와 함께 공동 가정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수급자 내지 배우자(인생의 반려자)의 보호에 책임을 부담하면서,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가족지원금이 당연히 허용되는 사람에게 대하여 제2항에 의거하여 가족수당이 승인되는 경우 배우자(인생의 반려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공될 수 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한 달 동안 일반 사회보험법(ASVG) 제5조 제2항의 최소한계치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어야 한다.</p>
<p>(4) Der Familienzuschlag beträgt für jede zuschlagsberechtigte Person täglich ein Dreißigstel des Kinderzuschusses gemäß § 262 Abs. 2 ASVG, kaufmännisch gerundet auf einen Cent.</p>	<p>(4) 가족수당은 각 수당에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사회보험법(ASVG) 제26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동수당의 1/30에 해당되며, 상업적으로 1센트로 표현된다.</p>
<p>(5) Abs. 3 ist auf eingetragene Partner(innen) ebenso wie auf Lebensgefährtinnen sinngemäß anzuwenden.</p>	<p>(5) 제3항은 인생의 반려자와 같은 의미의 등록된 파트너에 대하여 적용된다.</p>

<p>(6) Für die Dauer der Teilnahme an Maßnahmen der Nach- und Umschulung sowie zur Wiedereingliederung in den Arbeitsmarkt im Auftrag des Arbeitsmarktservice gebührt zusätzlich zum täglichen Arbeitslosengeld zur Abgeltung der mit der Teilnahme an solchen Maßnahmen verbundenen Mehraufwendungen ein Zusatzbetrag in der Höhe von 1,86 € täglich. Wenn die mit der Teilnahme an Maßnahmen verbundenen Mehrkosten durch eine Zuschussleistung vom Träger der Einrichtung (§ 18 Abs. 6 lit. e) gedeckt werden, gebührt kein Zusatzbetrag. Der Zusatzbetrag ist jährlich, erstmals für das Jahr 2014, mit dem Anpassungsfaktor gemäß § 108f ASVG zu vervielfachen und kaufmännisch auf einen Cent zu runden.</p>	<p>(6) 노동시장서비스의 명령에서 보수교육과 재교육 및 노동시장으로 재편입을 위한 조치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조치에 참가와 관계된 지출비용의 보상에 대한 부수적인 일일실업수당에 대하여 추가금액은 하루 1.86 유로가 인정된다. 기관 담당자의 지원금 이행(제18조 제6항 e)에 의하여 조치의 참가와 관계된 초과비용이 일치하는 경우 추가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추가금액은 일반 사회보험법(ASVG) 제 108f조에 의거하여 조정 계수를 사용하여 연간(최초 2014년 동안) 배수로 늘어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1센트로 표현된다.</p>
<p><b>Einstellung und Berichtigung des Arbeitslosengeldes</b></p>	<p><b>실업급여의 중지 및 수정</b></p>
<p>§ 24.</p> <p>(1) Wenn eine der Voraussetzungen für den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wegfällt, ist es einzustellen; wenn sich eine für das Ausmaß des Arbeitslosengeldes maßgebende Voraussetzung ändert, ist es neu zu bemessen. Die bezugsberechtigte Person ist von der amtswegigen Einstellung oder Neubemessung unverzüglich durch Mitteilung an die zuletzt bekannt gegebene Zustelladresse in Kenntnis zu setzen. Die bezugsberechtigte Person hat das Recht, binnen vier Wochen nach Zustellung der Mitteilung einen Bescheid über die Einstellung oder Neubemessung zu begehren. Wird in diesem Fall nicht binnen vier Wochen nach Einlangen des Begehrens ein Bescheid erlassen, so tritt die Einstellung oder Neubemessung rückwirkend außer Kraft und die vorenthaltene Leistung ist nachzuzahlen. Ein späterer Widerruf gemäß Abs. 2 und eine spätere Rückforderung gemäß § 25 werden dadurch nicht ausgeschlossen.</p>	<p>제24조</p> <p>(1) 실업급여 청구권에 대한 전제요건이 누락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지된다. 실업급여의 규모에 대하여 결정적인 전제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산정된다. 지급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공무상 중지 또는 새로운 산정을 지체 없이 통지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공고된 우편주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통지의 도달 후 4주 내에 중지 또는 새로운 산정에 대하여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요구의 도달 후 4주 내에 결정되지 않는다면 중지 또는 새로운 산정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리고 지급중지된 이행은 추가로 지급된다. 이것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장래의 철회 및 제25조에 따른 장래의 반환청구는 제외되지 않는다.</p>

<p>(2) Wenn die Zuerkennung des Arbeitslosengeldes gesetzlich nicht begründet war, ist die Zuerkennung zu widerrufen. Wenn die Bemessung des Arbeitslosengeldes fehlerhaft war, ist die Bemessung rückwirkend zu berichtigen. Der Widerruf oder die Berichtigung ist nach Ablauf von drei Jahren nach dem jeweiligen Anspruchs- oder Leistungszeitraum nicht mehr zulässig. Wird die Berichtigung vom Leistungsempfänger beantragt, ist eine solche nur für Zeiträume zulässig, die zum Zeitpunkt der Antragstellung nicht länger als drei Jahre zurück liegen. Die Frist von drei Jahren nach dem Anspruchs- oder Leistungszeitraum verlängert sich, wenn die zur Beurteilung des Leistungsanspruches erforderlichen Nachweise nicht vor Ablauf von drei Jahren vorgelegt werden (können), bis längstens drei Monate nach dem Vorliegen der Nachweise.</p>	<p>(2) 실업급여의 인정이 법률상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인정은 취소된다. 실업급여가 위법하게 확정된 경우 확정은 소급적으로 수정된다. 철회 또는 수정은 각 청구기간 또는 이행기간이 3년이 경과된 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지급 수취인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정은 단지 신청서의 제출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허용된다.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청구기간 또는 이행기간 후 3년은 증거제출 후 최고 3개월까지 연장된다.</p>
---	---

<p>§ 25.</p> <p>(1) Bei Einstellung, Herabsetzung, Widerruf oder Berichtigung einer Leistung ist der Empfänger des Arbeitslosengeldes zum Ersatz des unberechtigt Empfangenen zu verpflichten, wenn er den Bezug durch unwahre Angaben oder durch Verschweigung maßgebender Tatsachen herbeigeführt hat oder wenn er erkennen mußte, daß die Leistung nicht oder nicht in dieser Höhe gebührte. Die Verpflichtung zum Ersatz des empfangenen Arbeitslosengeldes besteht auch dann, wenn im Falle des § 12 Abs. 8 das Weiterbestehen des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festgestellt wurde, sowie in allen Fällen, in denen rückwirkend das Bestehen eines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festgestellt oder vereinbart wird. Der Empfänger einer Leistung nach diesem Bundesgesetz ist auch dann zum Ersatz des unberechtigt Empfangenen zu verpflichten, wenn sich ohne dessen Verschulden auf Grund eines nachträglich vorgelegten Einkommensteuer- oder Umsatzsteuerbescheides ergibt, daß die Leistung nicht oder nicht in diesem Umfang gebührte; in diesem Fall darf jedoch der Rückforderungsbetrag das erzielte</p>	<p>제25조</p> <p>(1) 실업급여의 수취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김으로서 이행되는 경우 내지 불이행 또는 급여가 승인되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취인은 이행 중지, 경감, 철회 또는 수정에서 자격이 없는 수령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 제8항의 경우 고용관계가 지속적으로 존속되는 것이 확인되고, 소급적으로 고용관계의 존속이 확인되거나 또는 약속된 경우 수령된 실업급여에 대하여 배상 의무는 존재한다. 수령인의 책임 없이 후에 제출된 소득세 통보 또는 매상세 통보로 인하여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이행 범위가 초과되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동 연방법에 따라서 이행의 수취인은 권한이 없는 수령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가진다. 이 경우 반환청구금액은 벌어들인 수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a조에 따라서 일시적인 소득활동에 의하여 수익 계산이 전혀 또는 하찮게 이행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 실업급여(재난 지원금)의 수취인은 권리가 없는 수령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행이 동 범위에서 행해지지 않았다는 결정에 대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상소의</p>
--	---

Einkommen nicht übersteigen. Ebenso ist der Empfänger des Arbeitslosengeldes (der Notstandshilfe) zum Ersatz des unberechtigt Empfangenen zu verpflichten, wenn nachträglich festgestellt wird, daß auf Grund einer Anrechnung von Einkommen aus vorübergehender Erwerbstätigkeit gemäß § 21a keine oder nur eine niedrigere Leistung gebührt. Die Verpflichtung zum Rückersatz besteht auch hinsichtlich jener Leistungen, die wegen der aufschiebenden Wirkung eines Rechtsmittels oder auf Grund einer nicht rechtskräftigen Entscheidung des Bundesverwaltungsgerichtes gewährt wurden, wenn das Verfahren mit der Entscheidung geendet hat, dass die Leistungen nicht oder nicht in diesem Umfang gebührten.

정지효과로 인하여 또는 연방행정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인하여 제공된 이행에 대한 상환의무 역시 존재한다.

(2) Wird ein Empfänger von Arbeitslosengeld (Notstandshilfe) bei einer Tätigkeit gemäß § 12 Abs. 3 lit. a, b oder d durch öffentliche Organe, insbesondere Organe von Behörden oder Sozialversicherungsträgern oder Exekutivorgane, betreten, die er nicht unverzüglich der zuständigen regionalen Geschäftsstelle angezeigt hat (§ 50), so gilt die unwiderlegliche Rechtsvermutung, daß diese Tätigkeit über der Geringfügigkeitsgrenze entlohnt ist. Das Arbeitslosengeld (die Notstandshilfe) für zumindest vier Wochen ist rückzufordern. Erfolgte in einem solchen Fall keine zeitgerechte Meldung durch den Dienstgeber an den zuständigen Träger der Krankenversicherung, so ist dem Dienstgeber von der regionalen Geschäftsstelle des Arbeitsmarktservice ein Sonderbeitrag in der doppelten Höhe des Dienstgeber- und des Dienstnehmeranteiles zur Arbeitslosenversicherung (§ 2 des Arbeitsmarktpolitik-Finanzierungsgesetzes, BGBl. Nr. 315/1994) für die Dauer von sechs Wochen vorzuschreiben. Als Bemessungsgrundlage dient der jeweilige Kollektivvertragslohn bzw., falls kein Kollektivvertrag gilt, der Anspruchslohn. Die Verschreibung gilt als vollstreckbarer Titel und ist im Wege der gerichtlichen Exekution eintreibbar.

(2) 공적 기관, 특히 관청 또는 사회보험담당기관 내지 집행기관에 의하여 제12조 제3항 a, b 또는 d에 따른 활동에서 실업급여(재난 지원금)의 수취인이 지체 없이 관할 지역 영업소에 활동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제50조) 동 활동이 근소한 수입 이상으로 지급된다는 법률상의 추정이 적용된다. 최소 4주 동안 실업급여(재난 지원금)는 반환될 수 있다. 이 때 고용인에 의하여 관할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적합한 시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시장서비스 지역 영업소는 실업보험(노동 시장정책-자금조달법, BGBl. Nr. 315/1994, 제2조)에 대하여 고용인 및 근로자에게 6주 동안 지급되는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특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체협약임금은 산정 기준으로서 이용되고, 경우에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유보임금이 이용된다. 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법률로서 간주되고 그리고 재판상 집행 방법으로서 징수될 수 있다.

<p>(3) Wenn eine dritte Person eine ihr nach diesem Bundesgesetz obliegende Anzeige vorsätzlich oder aus grober Fahrlässigkeit unterlassen oder falsche Angaben gemacht und hiedurch einen unberechtigten Bezug verursacht hat, kann sie zum Ersatz verpflichtet werden.</p>	<p>(3) 제3자가 연방법에 따라서 의무신고를 의도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게을리 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격이 없는 지급이 초래되는 경우 제3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p>
<p>(4) Rückforderungen, die gemäß Abs. 1 vorgeschrieben wurden, können auf die zu erbringenden Leistungen aus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mit der Maßgabe aufgerechnet werden, daß dem Leistungsbezieher die Hälfte des Leistungsbezuges freibleiben muß; sie vermindern den Anspruch auf die zu erbringenden Leistungen, auch wenn er gepfändet ist. Die regionalen Geschäftsstellen können anlässlich der Vorschreibung von Rückforderungen Ratenzahlungen gewähren, wenn auf Grund der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des Schuldners die Hereinbringung der Forderung in einem Betrag nicht möglich ist. Die Höhe der Raten is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des Schuldners festzusetzen.</p>	<p>(4) 제1항에 따라서 규정된 반환청구는 수취인이 이행 지급의 절반을 수령하는 경우 실업급여보험으로부터 제공되는 이행에 차감 계산될 수 있다. 비록 수취인의 재산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반환청구는 제공되는 이행에 대한 청구권을 감소시킨다. 채무자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금이 반환될 수 없는 경우 지역 영업소는 명령이 행해지기 이전에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할부금액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상황 하에 결정된다.</p>
<p>(5) Werden Rückforderungen gestundet oder Raten bewilligt, so sind keine Stundungszinsen auszubedingen.</p>	<p>(5) 반환청구가 유예되거나 또는 할부가 허용된 경우 지급유예기간이라는 청구되지 않는다.</p>
<p>(6) Eine Verpflichtung zum Ersatz des unberechtigt Empfangenen einschließlich der Aberkennung des Anspruches auf Arbeitslosengeld gemäß Abs. 2 besteht nur, wenn eine solche innerhalb von drei Jahren nach dem jeweiligen Leistungszeitraum verfügt wird. Eine Verfügung zur Nachzahlung ist nur für Zeiträume zulässig, die nicht länger als drei Jahre zurück liegen. Wird eine Nachzahlung beantragt, so ist eine solche nur für Zeiträume zulässig, die nicht länger als drei Jahre vor dem Zeitpunkt der Antragstellung liegen. Die Frist von drei Jahren nach dem Anspruchs- oder Leistungszeitraum verlängert sich, wenn die zur Beurteilung des Leistungsanspruches erforderlichen Nachweise nicht vor Ablauf von drei Jahren vorgelegt werden (können), bis längstens drei Monate nach dem Vorliegen der Nachweise.</p>	<p>(6) 승인이 각 이행 기간 후 3년 내에 처리되는 때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박탈을 포함하여 자격이 없는 수취에 대한 배상책임은 존재한다. 추가지급에 대한 권한은 단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추가지급이 신청된 경우 단지 신청서의 제출시점 이전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이행청구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가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청구 기간 또는 이행 기간 후 3년은 증거의 제출 후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p>

(7) Abs. 4 gilt auch für Forderungen auf Ersatz unberechtigt bezogener Beihilfen des Arbeitsmarktservice.

(7) 제4항은 노동시장서비스의 최초 자격이 없는 이행 지원금의 배상에 대한 요구에도 적용된다.



법제현안분석지원  
현안대응 Issue Paper 2-③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2

오스트리아

---

발행일 2018년 10월 31일

발행인 이익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860-7 93360

